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2025. 11.11. (화) 14:0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421호)



▶ 프로그램

- ▶▶ 일 시: 2025. 11. 11.(화) 14:00
- ▶▶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 주 최: 박균택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 주 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4:00~14:20	개회사	홍대식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조순열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환영사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
	축 사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14:20~14:30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돈	
14:30~14:50	발제 1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14:50~15:10	발제 2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15:10~15:30	발제 3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15:30~15:40	휴식	
15:40~16:50	종합토론	좌장: 이선희 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토론 1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토론 2	김지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토론 3	구본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토론 4	이동근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토론 5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토론 6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토론 7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6:50~17:30	질의응답 및 폐회	

> 패널정보



[발제1]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인권이사)

- (현) 서울지방법원 인권이사
- (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자문위원
- (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중앙컨설팅팀



[발제2]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수석부회장)

- (현)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 (현) 서울지방법원 수석부회장
- (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발제3]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 (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토론1]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0회 판사)

- (현) 서울지방법원 제1부 제10회 판사
- (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전)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저작권법)



[토론2] 김지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현) 한국법조인협회 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현) 여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토론3] 구본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현)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 (전) 장관 비서실
- (전)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장
- (전) 혁신행정담당관



[토론4] 이동근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 (현)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4부장 검사

▶ 패널정보



[토론5]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 법무법인(유한) 한결



[토론6]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현)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 변호사
(현) 서울지방법원사회 인권위원장
(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실무위원장
(현) 리걸클리닉협의회 부회장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토론7]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전)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

➤ 목 차

발제1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 1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법원사회 인권이사)

발제2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11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법원사회 수석부회장)

발제3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25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토론문

토론1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63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법원사회 국제이사)

토론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 67

김지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토론3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75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목 차

토론4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79

이동근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토론5 로스쿨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83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토론6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95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토론7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101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홍대식입니다.

오늘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함께 개최해주신 진선미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익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17년간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토대로,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기초법학의 내실을 강화하는 등 한 단계 더 성숙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논의될 세 가지 주제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의 기회균등 강화, ▲전문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는 모두 로스쿨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입시제도, 실무역량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교육, 기초학문을 존중하는 법학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법조인 양성의 선순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보조수단을 넘어, 법률문서 작성, 판결 결과 예측 등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법조인의 역할 역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일수록, 정의와 인권,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법조인의 존재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공익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께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의 교육 현장과 법조계의 실무 경험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사법·행정부, 그리고 법조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논의 구조를 통해 제도의 공익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의회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홍 대 식**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님과 박균택 의원님,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님, 그리고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며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도입 당시의 목표와 이념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문대 중심의 선발 구조, 높은 학비 등으로 인한 진입 장벽, 기초법학의 위축 등이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 주요 논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과 언론이 법조인 양성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공정하고 유능한 법조인을 길러내는 일이 곧 법의 근본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의 개방성과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라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다 공정하고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법조인 양성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의 활성화는 현행 제도가 한층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과제들에 대해 발표해 주실 김수영 변호사님, 김기원 변호사님, 양천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선희 원장님과 토론에 참여하실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성찰하고,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순 열**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관후입니다.

진선미 의원실과 박균택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하는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예리한 분석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펼쳐주실 발표자, 토론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조인양성제도가 변화를 맞이한 지 이제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들은 언제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식 또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매년 많은 수의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사법 접근권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렵던 여러 곳에서 법조인들이 활약하고 있고 이곳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가 처음의 구상대로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확인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에 관한 고민이 늘어났고, 졸업 후의 추가 수습 과정에서 초임 변호사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변호사 징계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만큼, 이제 국회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미루어 왔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학교육이나 법조계를 대표하는 분들 외에 국회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제도의 개선을 토론함으로써 그 실효성도 크게 기대됩니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진선미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 관 후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오늘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진선미 의원님,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지방 변호사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그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입시 단계에서는 여전히 학벌과 비용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70%가 고소득층 가정 출신으로 추정되는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며, 특성화·기초법학 과목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 간의 격차 또한 심화되면서,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근본 취지도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노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지역과 공익을 위해 헌신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시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고,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졸업 이후에는 공공부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제안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포럼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회의원 **박 군 택**

➤ 축 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먼저,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박균택 의원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랜 기간 점수경쟁에 내몰린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제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윤리를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 제도의 본래 목표와 다른 결과 앞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고소득 가정 출신이며, 25개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서울 소재 상위 대학 졸업생들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영어성적과 같은 평가요소들이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층과 출신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동등한 기회 제공에도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실력과 역량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정착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제도가 당초 추구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 선 미**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

김수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법조인 양성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 - 로스쿨 입학전형 다양성과 학업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인권이사)

1. 문제의식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계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입학전형과 학업과정 전반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하다. 간명한 단어인 돈스쿨, 음서제가 가진 힘은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다.

기실 로스쿨 입시에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재학 과정에서 경제적 차이가 결과의 차별로 기능하지 않도록 신경 쓴 장학제도 역시 안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음서제’로 입학하여 ‘돈스쿨’을 다닌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물론 일부 사례나 제한된 통계로 제도 전반을 평가하는 일면적인 태도라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반응으로 충분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본 발제문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진단 위에서, 여전히 부족한 기회의 평등이 문제라면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와 학업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현실 진단

가. 입시 과정

이른바 음서제 비판에 관해 2016년 5월경 교육부에서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돌아보자. 당시 교육부는 부모·친인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불공정 의심사례를 중심으로 2014~2016학년도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약 6천여 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4건의 자소서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기재한 사례는 8건이었다.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한 사례는 1건으로 발표되었다. 생각만큼 대대적 입시비리는 실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6년 당시 기재금지를 고지한 로스쿨은 18개교에 해당했다. 이후 25개 로스쿨 모두 자소서 작성에 기재금지를 고지하여 직위나 직업 기재 시 실격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전면화했다. 면접에도 블라인드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상호 견제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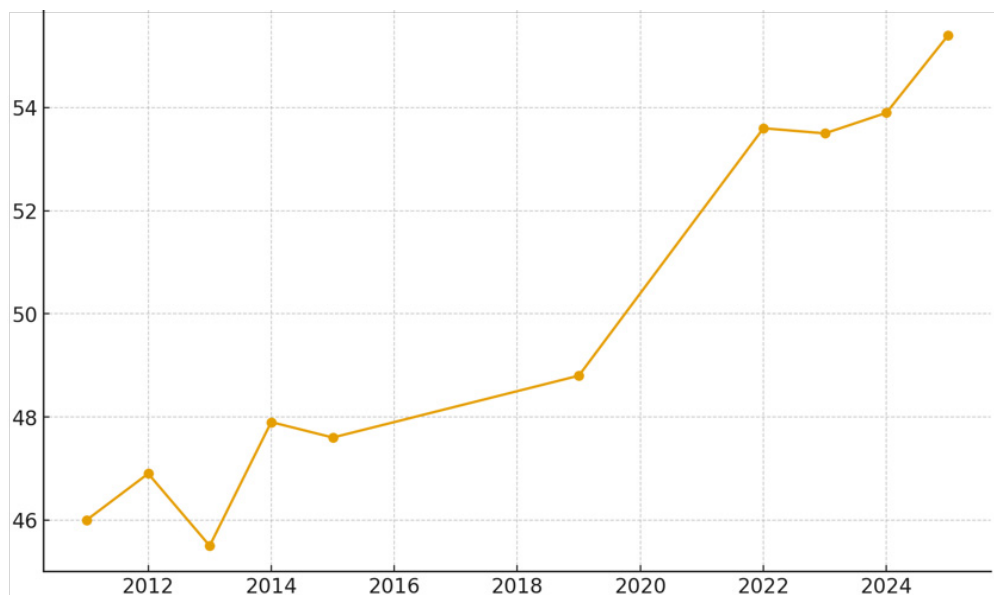
이로써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래 표와 그래프를 보면 전체 로스쿨에서 상위 학부 출신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 5월 교육부 발표와 그에 뒤따른 각 로스쿨들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강화되었음이 확인된다.

공식 발표된 데이터를 추려보면, 2011년 46%에서 출발한 SKY 출신 비중은 2019년까지 46~48% 수준을 기록하다 2022년 조사에서 53.6%로 절반을 넘어섰고, 작년 55.4%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참고로 2024년 KAIST 출신은 12명, 2025년 25명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공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KAIST, POSTECH과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나 해외 대학 출신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 수치가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임은 분명하다.

[표 1] 연도별 로스쿨 입학생 중 SKY 출신 비중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2022	2023	2024	2025
비중(%)	46.0	46.9	45.5	47.9	47.6	48.8	53.6	53.5	53.9	55.4

[그림 1] 연도별 로스쿨 입학생 중 SKY 출신 비중



결과를 놓고 볼 때, ‘공정성’을 제고한 결과 특정 대학 편중 비중이 강화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로스쿨이 다양성을 고려하고 싶어도 정량평가를 우선시하다보니 성적이 좋고 학부를 갓 졸업한 나이 어린 학생이 선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 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비단 로스쿨 입시단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위와 같은 현상은 형식적 공정성 강화가 처음부터 내정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 수시나 정시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학 입시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궤에 있다. 그럼에도 기회의 평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면 로스쿨 입시과정에 보다 과감한 시도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시도가 또 다른 결과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 그러한 결과적 불평등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나. 교육 과정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연 소득 1억 4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냈다. 이는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고소득층이라 보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신청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유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러한 기사가 파급을 일으키는 데에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자리한다. 위 보도자료와 같이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라 분류한 2022~2023년 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에 속했다고 나타남바,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비용 부담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하여는 장학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학생의 50.17%가 장학금을 받았고, 19.1%는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재학생은 전체의 49%이고, 특히 전액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은 전체의 17.8%로 집계되고 있어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가 관찰되지 않는다.

참고로 2022년 기준 각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1.57%에서 56.69%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장학금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2022년 로스쿨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강원대	39.59	서울시립대	56.69	전북대	32.20
건국대	35.74	성균관대	39.00	제주대	38.32
경북대	34.44	아주대	31.57	중앙대	40.00
경희대	33.00	연세대	31.77	충남대	40.49
고려대	33.40	영남대	33.05	충북대	54.11
동아대	33.71	원광대	34.53	한국외대	31.79
부산대	41.20	이화여대	34.09	한양대	31.98
서강대	35.39	인하대	39.33		
서울대	33.44	전남대	31.88	평균	36.83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은 생활형(need-based) 장학을 현재 수준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일이다. 현행과 같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장학제도의 세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생

활형 장학으로 개편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지급 현황을 사회에 공시하여 투명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동시에 생활형 장학 제도의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조인 양성 과정이 목표해야 할 바가 이른바 ‘개천’ 출신에게 법조인이 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인 양성 과정의 절차와 방법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만 따지는 데에서 벗어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사회적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관련하여 미국 로스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방 차원의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를 우리 사회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제언

가. 입시 과정에서의 과감한 변화

법학적성시험은 로스쿨 서류전형 중 전 응시자를 모집단으로 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단이다. 초기에는 적성시험이라는 점에서 학업적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으나, 10년 이상 누적된 법학적성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양자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추리논증 영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밝혀져 법학적성시험 자체의 구조가 조절되어 추리논증의 비중이 높아졌고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그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학적성시험이 지닌 성격을 살펴보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LSAT을 모범으로 도입한 시험이다. LSAT의 경우 로스쿨 수학에 있어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기술들, 구체적으로 “복잡한 구문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능력,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구성하고 관리하며 이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리와 주장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 정의된다. LSAT의 목표는 법학 학습능력과 일정 이상의 상관관계를 요구하며 높은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1시간 30분 이내의 시험이어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948년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결과가 축적된 LSAT은 신뢰성이 매우 높은 평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

히 LSAT의 결과와 응시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1년 이상 수학한 결과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높은 신뢰도와 입시에서의 비중으로 LSAT 준비과정의 수업료가 평균 1,000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 이르러 법학적성시험과 수학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보고가 축적되고 있고 시험 자체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는 단계이다. 물론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 수준에서 볼 때 법학적성시험의 성격상 문제유형의 암기와 반복학습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에 더하여 법학적성시험이 지닌 중앙집중형 표준시험으로서의 특징, 즉 응시자의 출신학교·전공·지역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법학적성시험 중심의 입시전형은 “학벌 중심의 선발”에서 “능력 중심의 선발”로 전환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기 어렵다.

많은 제도개선을 거듭해왔으나 여전히 입시의 불투명성 문제, 연령 차별, 학벌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과감한 입시제도 변경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적성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시험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입시 전형을 최대 25% 범위에서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는 로스쿨 입시에 대한 관문을 넓히고 투명성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현재까지의 법학적성시험이 지닌 특성, 다시 말해 시험문항 구성 및 문제해법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짧은 시험 시간 및 반복적 암기 학습과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억제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학부 수업과정에 대한 파행 우려와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연계형 특별전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특별전형은 “입학자의 7% 이상”이라는 기준 적용을 받고 있다. 동법에서는 특별전형의 대상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를 뭉뚱그려 ‘7%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로 입시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모자란다. 특별전형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소득 연계형 특별전형에 대해 최저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나. 공공선의 관점에서 교육 과정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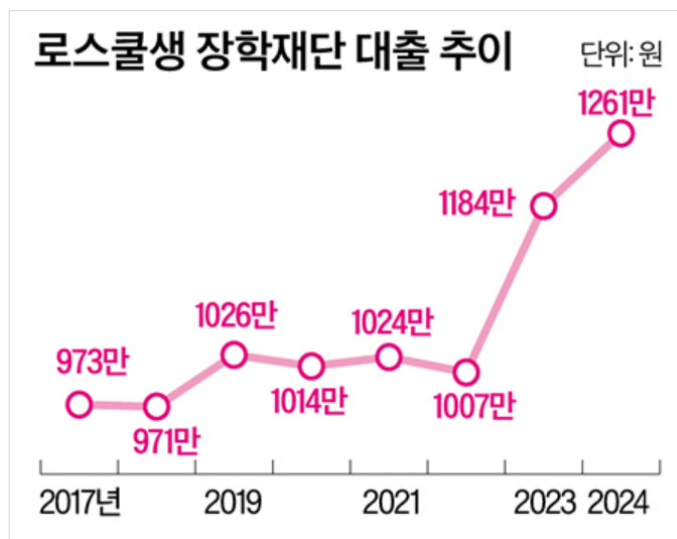
학업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먼저 생활형 장학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장학 제도로 뭉뚱그려 설정하는 관행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히 탈피할 것을 제안한다. 오로지 생활형 장학 비중을 높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함정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고려해보자. 미국의 경우 대형로펌 취업으로 경도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 과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직종으로의 진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사회적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s)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PSLF)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제고하고 있다.

PSLF는 학자금 대출의 구조를 기존의 ‘현재 개인의 재정적 제약에 대한 평가’로부터 ‘향후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조로 변경하려는 시도이다. 요컨대, 학자금 부채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개인의 경제적 희생 없이 공익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로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적 투자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로스쿨 재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5% 가량 늘어난 1,261만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2] 로스쿨 재학생의 대출 규모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실효적 지원책이자 사회적 공공선의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 직종에 대한 일정 기간의 근속을 조건으로 잔여 원금과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한국형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생활비 대출에 대한 연간 한도(400만원)를 늘리고 근속 연수별 단계적 감면을 도입하는 방안(가령 5년 근속 시 30%, 7년 근속 시 60%, 10년 근속 시 100% 탕감)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4. 결론

로스쿨 도입 이후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에서 경제·사회적 배경이 성취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기반의 투명한 선발과 소득 연계형 특별전형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업 단계에서는 생활형 장학 확대와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성을 견지하는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공익과 사회정의 실현을 본질적 책무로 하는 법조 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초기 단계부터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확립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김기원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수석부회장)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 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수석부회장)

1. 서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기반의 법조인 양성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법전원 제도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할 때, 변호사들의 출신 대학과 전공, 연령대가 다양해졌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도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¹⁾ 또한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사회의 많은 인재가 장기간 고시 준비에 몰두하며 겪었던 폐단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법시험 방식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법전원 제도를 보완하기 보다는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과 같은 ‘누구나 일정한 법학 수험 능력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고, 그 중 소수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병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제도의 순기능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전원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이익이 크고, 과거보다 폐단이 적은 제도로 평가된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적·효율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전원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4년제 개편, ②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유급제도 활성화, ③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팩트 체크”, 2021. 4., 4면 이하.

2. 법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 개편

가. 4년 과정의 필요성

법전원 제도는 사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 중심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2009년에 도입되었다. 현재 법전원은 미국·일본 제도와 유사하게 교육과정을 3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3년제 교육과정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폭넓은 교양, 사회적 통찰력, 그리고 전문적 실무 능력을 충분히 함양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전원 입학생의 대부분은 법학 비전공자로서, 입학 직후 기초 법학 개념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새로 익혀야 한다. 하지만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기초 법학, 주요 법 과목, 실무 교육, 윤리 교육, 모의재판, 인턴십, 변호사시험 준비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하므로 학습 부담이 과중하고, 교육의 질 또한 균형을 잃기 쉽다. 그 결과, 법전원 교육이 실무역량보다는 변호사시험 대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교육의 목표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공학습 기간과 단계적 실습이 필수적이다. 의사·약사·수의사·치과의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전문직의 경우, 의과대학은 6년제(2년의 교양과정 + 4년의 본과), 약학대학은 2+4년제(기초과정 2년 + 전공과정 4년)로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학습량 때문이 아니라, 기초이론-심화학습-임상실습의 체계를 통해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동시에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지난 2022년 2월 개최한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 대회’에서, 입상팀 4개 중 3개 팀이 공통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 개편’안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²⁾ 4년 과정으로의 개편이 실무수습의 내실화 및 다양화, 추가적인 등록금 수입 마련, 로스쿨 제도의 개선요구를 수용할 논의의 틀 마련, 로스쿨 교육 및 전문화 교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³⁾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서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 상당한 교육기간이 필요했다. 법학과에서 최소 35학점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이후 수험 학습과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쳤다. 비록 수험 과정이 형식적인 교육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법학 전공 3년과 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약 5년의 교육 기간이 존재했다.

2)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 대회”, 2022. 2. 25.

3) 공기광, “로스쿨, 4년제로 바꾸면 어떨까”, 법률신문, 2018. 2. 5.

물론 과거 법학과 교육과 현재의 법전문 교육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 3년제 법전문 과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상당하며, 이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에는 교육기간 면에서 양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4년제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나. 4년 과정 개편과 ‘전문분야’ 학점 필수 이수제, 6개월 실무수습제 폐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과 도입취지는 ‘변호사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공직⁴⁾과 법조유사직역의 영역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법전문 도입취지에 맞춰 2010년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⁵⁾

현행 법전문 교육과정은 전공 3년, 약 90학점의 이수를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학부 법학과와 유사한 기간의 교육과정이지만, 법전문은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니라 실무교육, 인턴십, 법조윤리 교육, 변호사시험 대비 등 훨씬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포함한다. 법전문원의 교육과 학업 밀도가 학부 법학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년 6학기 90학점 체계로는 법전문법 제2조가 규정한 교육이념, 즉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전문원을 4년제로 개편할 경우, 8학기 120학점 이상의 이수를 요구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하다. 추가된 1년 동안 약 30학점을 더 이수할 수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학업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확장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간이 단순히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여전히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이른바 ‘7법’(헌법·민법·형법·민소법·형소법·상법·행정법)에 집중하는 수강 편중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4년제가 도입되더라도, 학생들이 추가된 기간을 변호사시험 대비에만 활용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 학점 필수이수제’ 등을 도입하여, 변호사시

4) 한대희, “전문인력의 관료임용을 막는 현 고시제도 개혁”, 한국과학기술인연합, 2002.

5) 안경봉 외 3인,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 법무부, 2010. 12.

험 과목 외의 선택과목이나 전문 법 분야를 일정 학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변호사법 제21조의2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를 수행하거나 연수를 마쳐야만 단독 개업이나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규 변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실무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단독 수행의 위험을 완화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형식화되어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고, 실무수습 기간이 청년 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전원의 4년제 개편을 통해 확보된 교육기간 중 일부를 실무수습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학 중 및 방학 기간 동안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형식적인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실무교육의 실효성은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즉, 학위과정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교육 경험을 체득하도록 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 총 정원의 증가와 학년당 정원의 감소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제한, 최소 교원 수 확보, 실무경력 교원의 비율, 교육환경 및 시설의 적정성, 재정적 안정성, 장학제도 등 학생 지원체계,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개설, 정원 인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설치 인가제도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년당 약 2,000명, 총 3개 학년 6,000명 규모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4년제로 개편할 경우, 학년당 2,000명씩 4개 학년, 총 8,000명을 수용할 여건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 많은 교과목 개설, 이를 담당할 교원의 확충, 열람실·강의실 등 학습 공간의 확장, 행정 인력의 추가 배치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으로는 현행 설비를 유지한 채 4년제를 시행할 경우, 학년당 약 1,500명씩 4개 학년으로 구성하여 총 정원을 6,000명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 학년 6,000명을 교육할 때보다 4개 학년 6,000명을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다양화와 학사운영 복잡성 증가로 인해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4년제 전환에 따라 학년당 정원을 일률적으로 1,500명까지 감축하기보다는, 학년당 약 1,600명 수준으로 조정하여 총 정원을 약 6,4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4년제 개편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전체 법조인 양성 규모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학년당 정원이 감소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합격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감소와 법률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수요 감소 추세와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4년제 개편은 단순한 교육연한의 연장이 아니라, 법조인 수급의 구조적 조정과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 필요성과 유급제도 활성화

가. 학사관리의 중요성

교육기관의 학업 성과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강의와 학생의 성실성·자질·학업 동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요소 외에도, 교육기관이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제도적 환경, 즉 학사 관리 체계, 평가 방식, 구성원들의 문화, 성취 동기 유발 구조 역시 학업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변호사단체에서 주관하는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호사들은 “연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학생 시절처럼 절실하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평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교육의 질이나 학습자의 역량뿐 아니라, 제도 설계와 평가 구조가 학습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법학과, 사법시험 준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학부 법학과보다 충실하고, 수업 및 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훨씬 성실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중간·기말고사, 퀴즈, 리포트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 성적은 학점에 반영되어 학생의 장래 성취와 연결된다. 이러한 평가는 재학 기간 내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업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기간 중 접하는 모든 내용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더불어 변호사시험 불합격 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외적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동시에 변호사시험 불합격 가능성에 과도하게 의존한 학사 관리 방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의과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기 중 수시평가·임상실습 평가 등으로 학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학생이 의사 국가시험 합격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학업 긴장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시험이라는 단일한 관문에 과도하게 동기부여가 집중되어 있어, 학기 중의 내재적 학습동기 강화와 지속적 성취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도 의학과와 유사하게 학기 중 평가의 실질화, 출석·참여·과제 중심의 학사 관리 강화, 수시 학습 성과 점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과정 자체의 동기부여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교육기간 내에서도 더 높은 학업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과 결부된 유급제도의 운영 필요성

위에서 살펴보았듯 교육의 질적 성과는 단순히 강의의 수준이나 학생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교육기관이 어떻게 학사 제도를 설계하고, 그 제도를 통해 학생의 학업 태도와 동기를 관리하느냐가 학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사관리 제도의 운영은 교육기관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법전원의 교육은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법적 사고력·윤리의식·실무응용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다층적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명확한 학습 목표와 긴장감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급제도의 활성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급제도는 단순히 학업 성취가 부족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지정하여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의과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급제도가 엄격히 운영되지만, 유급을 면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학업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졸업자의 최소 역량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법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 미달 시 유급 조치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보충프로그램·멘토링·재시험 등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유급제도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교육의 완결성’에 두어야 한다. 평가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업 지원제도를 병행한다면, 유급제도는 법전원의 학사 관리가 실제 학업 성취로 이어지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4.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문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인원은 기수당 약 200~300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표를 작성하였다. 표의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기초 가정을 전제로 하였다.

첫째, 재학생 중 일부가 반수 또는 자퇴로 중도 이탈하더라도, 결원보충제를 통해 일정 수준이 보충되고 일부가 다시 자퇴하므로, 졸업자 수는 입학 정원인 2,000명 내외로 수렴하는 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졸업생이 중도 포기 없이 최대 5회까지 응시를 지속한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의 수렴 구조를 볼 수 있다.

매년(기수당) 합격자수	매년 응시자수	수렴 합격률	기수당 포기 오탈자수/비율	비고
2000	2000	100%	0 / 0%	법전원 졸업자 무시험 자격취득
1950	2200	88%	50 / 2.5%	
1900	2400	79%	100 / 5%	
1880	2480	75%	120 / 6%	
1800	2800	64%	200 / 10%	

매년(기수당) 합격자수	매년 응시자수	수렴 합격률	기수당 포기 오탈자수/비율	비고
1700	3200	53%	300 / 15%	현행 합격자수 수준
1600	3600	44%	400 / 20%	
1500	4000	37%	500 / 25%	입학자수 대비 75% 합격 기준
1300	4800	27%	700 / 35%	
1000	6000	16%	1000 / 50%	
500	8000	6%	1500 / 75%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매해 60~8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면 대다수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예컨대 합격률을 64% 또는 75%로 고정하더라도, 연간 합격자 수는 각각 약 1,800명, 1,880명 수준이며, 누적 낙오자 비율은 약 10% 내외가 된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불합격자는 구조상 불가피하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단순히 시험 합격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합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둘러싼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심리학의 ‘개미집단 연구’에 따르면, 부지런한 개미를 제거하면 게으른 개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게으른 개미를 제거하면 남은 개미 중 일부가 다시 게을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인간 사회에 비추어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며, 일부는 우월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취 동기를 얻는 반면, 일부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적당히 해도 충분하다’는 자기합리화로 나아가는 심리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 안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긴장감과 학업 몰입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누군가는 경쟁자에 비해 게으르고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많은 학업과 어려운 난관을 요구해도 이를 돌파할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선별되었음에도, 교육제도의 한계가 이들을 나태함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 예외적 학생(소위 ‘검클빅’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그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학업 압력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변리사시험 등 전문직 자격시험들이 여전히 고시제도의 형태로 존재하며, 사회적으로 이들 시험의 학업 난이도와 변호사시험이 비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성과가 단순한 자율성 강화만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지필고사가 법조인의 역량을 전부 대변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학업 긴장과 경쟁이 사라질 경우, “시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부실한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전원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실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나.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 중 매년 약 2,000명을 선발하는데, 이들은 입시 당시의 시점에서 경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관념적으로는, 우수한 2,000명의 인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불합격한 나머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될 기반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정 비율(약 10% 이내)의 학생은 5회 불합격(5탈)으로 법전원 입시 불합격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을 시작부터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진학이 아니라 ‘국가가 선발한 2,000명의 전문직 예비 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 학부 진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학부 과정은 ‘어디에라도 진학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으로 여겨지는 반면, 법전원은 석사학위 수준의 전문직 양성과정으로, 처음부터 일정 비율의 학생이 구조적으로 낙오하도록 예정된 체계는 ‘법전원 입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검증한 학생 중 일부를, 입학조차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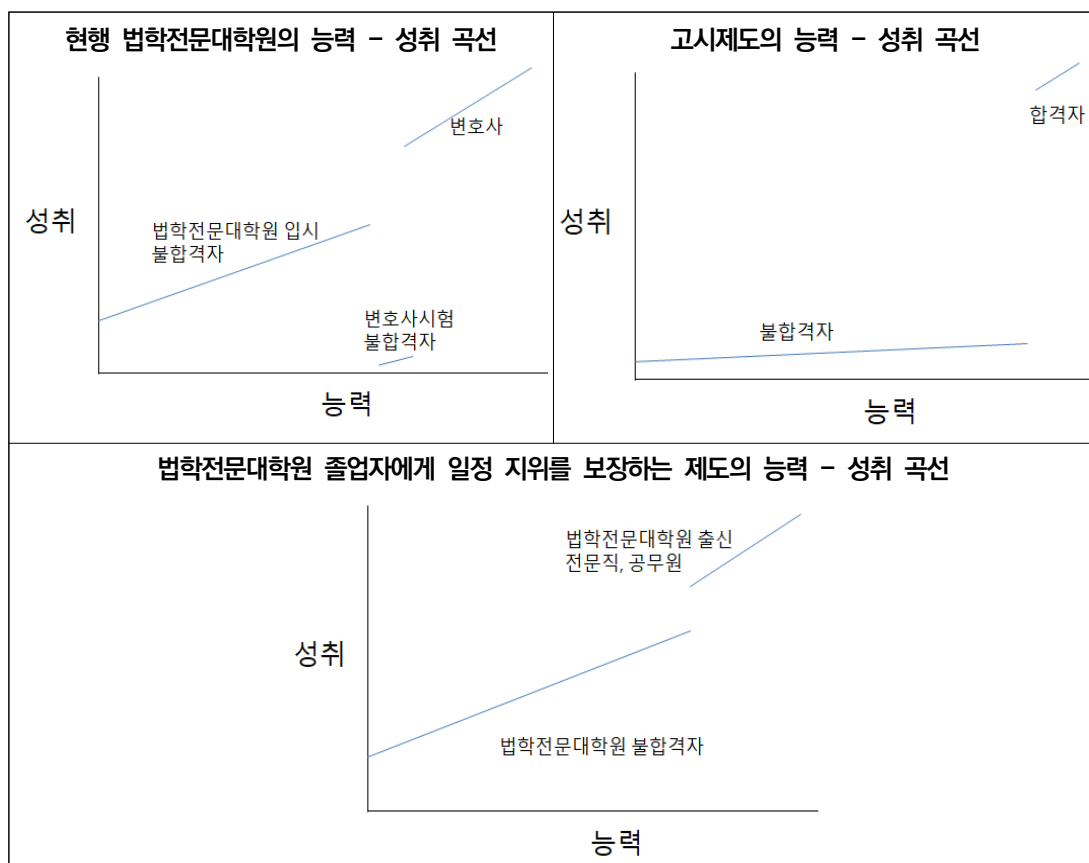
고시제도·현행 법전원 제도·졸업자에게 일정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비교하는 능력·성취 곡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고시제도는 극단적 경쟁 속에서, 합격자의 성취는 크지만, 대다수를 점하는 불합격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양 집단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되는 구조를 가진다.

반면 현행 법전원 제도는 입시에 불합격한 사람의 손해가 적으므로 이들의 성취가 더 높지만, ‘법전원에 합격했지만 변호사시험에는 불합격한’ 집단의 능력 대비 성취가 오히려 더 낮은 불합리성을 드러낸다.

이에 비해 법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일정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전반적인 능력-성취 곡선을 완만하게 하면서, 제도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요는 법전문대학원 입학 자체가 가진 제도적 책임과 사회적 약속을 고려해, 모든 입학생이 능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적·사회적 지위를 완만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정의(正義)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학생이 학업에 성실히 임하도록 만드는 이상적인 교육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완전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많은 생도들이 조종장교가 되기를 목표로 입학한다. 하지만 조종장교 양성과정에서는 상당수가 중도 낙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장교가 되지 못한 생도들이 ‘조종장교 낭인’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사관학교는 “조종장교 TO만 큼만 학생을 선발하고, 모두에게 조종장교 임관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대신 ‘과정에서 낙오하면 비조종 일반장교 임관을 보장하지만,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경쟁을 요구하는’ 절충적 방식을 택한다. 이와 같은 절충형 구조가 교육적 합리성과 사회적 효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법시험 제도는 응시자 수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시험 불합격자에게 별도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식을 상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법전원은 입학 단계에서 이미 국가가 정한 정원(연 2,000명) 안에서 선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인원은 국가가 ‘법조인 양성 교육의 대상으로 지정한 집단’으로 보고,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와 진로가 보장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모든 입소자가 이미 법학을 전공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전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도 제도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법전원은 다양한 전공 출신을 포함하므로,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졸업생도 유사 법조직역이나 법무 관련 공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성취를 달성한 법전원 졸업자에게 유사법조직역, 공공기관의 법무직, 준법지원인, 법률보조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연계한다면, 낙오자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⁶⁾

이는 고시제도의 폐해인 무제한 응시로 인한 낙오자의 대량 발생을 방지하면서도, 법전원의 경쟁적 학습 구조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한 전문직 자격 양성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를 대학원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 교육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6)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추천채용제’가 적성시험과 학업 성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처럼, 법전원 졸업자를 일정 요건 아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형평에도 부합한다.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가 ‘학부 졸업자 전원을 20대 중반의 나이에 6~7급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석사 과정인 법전원 입학경쟁을 뚫고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법전원 졸업자들이 이들보다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법전원 입학 자체가 이미 공정한 경쟁을 거친 결과이므로, 이를 공공부문 인력 선발 과정과 연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타당하다.

무제한 경쟁 속에서 낙오자를 양산하는 고시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학위교육 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일정한 경쟁과 성취 기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결국, 법전원 제도는 학생을 성공자와 실패자로 양분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성취를 달성한 모든 이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낙오자가 사회적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퇴로'와 대안적 진로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양천수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I. 서론

많은 이가 공감하듯이 우리 법학 교육과 법학은 현재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¹⁾ 무엇보다도 법학의 위기가 심각하다.²⁾ 이에 여러 이유를 언급할 수 있다. 그중 중요한 이유 하나로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 운용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도 언급할 수 있다.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률가 양성 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그리고 법조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랜 시간 논의된 끝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지향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³⁾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겠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현재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본래 설정되었던 목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교육이 아닌 시험이 법률가 양성 과정에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고 식민지화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화한다. 이에 발맞추어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전략적인

* 이 글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인 양천수·김현철·최광선, 『법학기초연구와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2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축약 및 보완한 것입니다.

1) 많은 연구 가운데 형법학의 관점에서 이를 지적하는 이원상, “한국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 극복에 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제23권 제2호(2021. 7), 245-276면 참고.
2) 다만 이에 관해서는 법학이 과연 학문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법학의 학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법학의 학문성에 관해서는 양천수, “기초법학의 의의와 필요성”, 『법철학연구』제25권 제1호(2022. 4), 95-122면 참고.
3)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법률가 양성교육 체계 정립기의 법학방법과 법학교육: 독일과 영국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제9권 제2호(2006. 12), 31-56면 참고.
4) 필자는 2006년 9월 1일에 영남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직후인 2007년부터 2009년 초반까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실무위원장, 총괄지원부장을 경험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과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생의 시각에서는 어찌 보면 목적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 결과 시험과목이 아닌 기초법학 과목과 시험과목이지만 비중이 약한 전문법학 과목은 현실의 교육과정에서 포함(inclusion)이 아닌 배제(exclusion)의 대상이 되었다. 기초법학 과목은 본래부터 인기가 많지 않은 과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세법이나 지식재산권법과 같이 실제 법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법학 과목도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우리 법학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출발한다. 법학 교육과 법학의 위기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연결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교육과정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현재 우리 법학 교육과 법학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제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고자 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배경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법정정책적 의의

(1) 도입 취지

2009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법학교육을 지탱했던 법과대학 및 이와 연결된 사법시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었다.⁵⁾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하면서 법학교육을 포함하는 우리 법률가 양성체계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취지에서 도입되었다.⁶⁾ 첫째는 사법개혁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정점으로 한 법률가 양성체계와 서열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법학교육 개혁 또는 정상화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법학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법학의 학문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⁷⁾ 말하자면

5)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해서는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 한국 로스쿨 탄생의 기록』, 문예원, 2013 참고.

6) 양천수, 『로스쿨과 법학교육』, 피앤씨미디어, 2025, 1면.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지역균형 발전이다. 그 어떤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⁸⁾ 요컨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개혁, 법학교육 정상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목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 현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이 같은 본래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법개혁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정점으로 하여 오직 소수의 법과대학만이 법률가를 배출하던 사법시험 시절 때와는 달리 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아래에서는 좀 더 다양한 학부 출신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률가로 양성된다.

그렇지만 법학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초기에는 법학교육이 정상화되는 듯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법과대학원이 출범한 초기부터 ‘실패’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초기에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면서 사법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법과대학 교육처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법학교육은 변호사시험의 식민지로 변질되었다. 사법시험 체제의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체제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롭게 제도화된 고시학원으로 전락하는 위험에 처하고 말았다. 법학교육과 법학의 정상화라는 목적은 현실의 요청 앞에 좌절되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구현되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도 피하지 못한 벽이었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재정적 부담은 더욱더 심화한다. 애초에 기울어진 출발점을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이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무엇보다도 지방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7) 사법시험 체제 당시에도 법학교육의 위기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보여주는 김철수, “법학교육은 위기인가, 법학교육의 재검토”, 『사법행정』제198호, 1977, 17-21면 참고.

8)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앞의 책, 6면 아래 참고.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참고 모델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사실 오랜 역사를 지닌다. 이러한 일환으로 한때 사법대학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설치되기도 하였다.⁹⁾ 당시 사법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던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에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과대학처럼 2+4년제의 법과대학 모델이 논의되기도 하였고 독일의 법학교육 체제가 모델로 거론되기도 하였다.¹⁰⁾ 그렇지만 결국 법과대학 체제의 대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선택되었다. 그때 참고 모델이 되었던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원형인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그리고 이를 변형해 받아들인 일본의 법과대학원이었다.

법과대학 모델을 법학전문대학원 모델로 전환하기로 한 점, 달리 말해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점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시 사법시험 열풍으로 인해 특히 서울대학교 학부 전체가 사법시험 준비로 몸살을 앓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의 주요 출신 그룹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과 함께 이른바 서울대 비법대 출신이 언급될 정도였다.

나아가 우리 법학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개념법학이 언급되면서 그 원인을 독일 법학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¹¹⁾ 그 때문에 독일 법학과 더불어 독일의 법학교육 체제에 반감이 많았고 이는 우리 법학교육의 문제로 이어지고는 하였다. 그로 인해 독일의 법학교육이 아닌 미국의 법학교육, 대륙법학의 교육 제도가 아닌 영미법학의 교육 제도가 적절한 대안으로 모색 및 선택된 것이다.

(1) 미국 로스쿨 모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 우리가 주로 참고했던 모델은 예일대 로스쿨이나 하버드대 로스쿨과 같은 미국의 Top 로스쿨이었다.¹²⁾ 이때 미국 로스쿨 제도를 어떻

9) 이에 관해서는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한국 법조교육의 효시』, 관악, 2013 참고. 사법대학원은 이후 사법연수원으로 재편된다.

10) 독일의 법학교육에 관해서는 양천수, “법률가 양성교육 체제 정립기의 법학방법과 법학교육: 독일과 영국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제9권 제2호, 2006, 31-56면 참고.

11) 개념법학에 관해서는 양천수, “개념법학: 형성, 철학적·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제10권 제1호, 2007, 233-258면 참고.

12) 미국 로스쿨, 특히 하버드 로스쿨에 관한 흥미진진한 소개로는 Scott Turow, *One L: The Turbulent True Story of a First Year at Harvard Law School*, Putnam, 1977 참고. 또한 한국인의 로스쿨 체험기로는 박권덕, 『여기는 로스쿨!: 국제 변호사를 꿈꾸는 한국 청년의 좌충우돌 로스쿨 체험기』, 북하우스, 2005 참고.

게 이해할 것인가에 견해 대립이 없지는 않았다. 일부 견해는 미국 로스쿨을 실무 중심 교육 기관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문대학원이라는 점, 판례 분석(case study)이 주된 교육 방법이라는 점이 근거로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미국 로스쿨 제도를 경험하고 이에 정통했던 전문가들은 이들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은 단순한 법적 지식보다는 법적 사고 능력이, 법률 실무보다는 이론이 중시된다고 파악하였다.¹³⁾ 더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창의적·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초법학적·전문법학적 역량이 강조된다고 이해되었다. 이는 미국 로스쿨의 도입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미국에서는 영국처럼 도제식 교육으로 법률가를 양성하였다. 이때 도제식 교육에서는 실무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풍토에서 볼 때 법학은 학문, 즉 과학이 될 수 없었다. 법학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었다.¹⁵⁾ 이 같은 배경에서 상당수의 미국 명문 대학은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을 대학에 마련하지 않았다. 이후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예일대학교를 포함한 몇몇 대학이 법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은 여전히 사설 법률학원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형만 대학 법교육이었을 뿐 그 내용은 여전히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역임한 랭델(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에 의해 일대 변혁을 맞는다. 1870년 하버드 로스쿨 학장으로 취임한 랭델은 법학을 단순한 실무적 기술이 아닌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장선에서 법학교육도 학문적 교육으로 정초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현하고자 랭델은 두 가지 방법을 법학교육에 도입하였다. 판례 분석 방법(case method)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Socratic method)이 그것이다. 이 방법은 판례를 단순히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소재로 하여 법학의 기본 개념과 체계, 원리 등을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말하자면 당시 독일에서 절정에 달했던 개념법학의 방법을 미국 로스쿨 교육에서 판례 분석 방법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랭델이 주도한 법학교육 개혁은 초반에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렇지만 이후 이러한 방법은 다른 로스쿨로 확산하였고 미국 법학교육의 기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3) 이에 관해서는 최대권, 『법학교육·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3 참고.

14) 미국 법학교육의 역사에 관해서는 최대권, 위의 책, 117-162쪽; 최종고, 『하버드 로스쿨』, 교육과학사, 1990, 151-187면; 박강우, “미국 법학교육의 과거와 현재”, 『법과 사회』제29호, 2005, 343-371면 참고.

15) 이러한 관점은 지금도 영국의 법학교육에서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영국의 법학교육에 관해서는 양천수, “법률가 양성교육 체제 정립기의 법학방법과 법학교육: 독일과 영국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제9권 제2호, 2006, 31-56면 참고.

이처럼 미국 법학교육의 역사를 일별하면 미국 로스쿨은 법학을 ‘과학’(Wissenschaft)으로 다루고 교육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 당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⁶⁾

“이러한 전문법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법학실무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법학교육제도개혁 논의 때 理論과 實務를 대비시켜 법과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이 양자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되었었다. 그러나 법학실무교육이 사법연수원의 그것에서 보여주듯이 판결문이나 기소장을 쓰는 것과 같은 판사·검사·변호사가 매일 매일의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문법과대학원이라고 할 때의 ‘전문’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러한 교육은 대학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대학의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수하는 데에는 몇 년이나 걸릴 만큼 긴 세월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아마도 몇 개월이면 충분하리라). 미국의 전형적인 법학교육의 경우에 임상과목과 같은, 실무를 익숙케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과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문법학교육은 실무교육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며 정확히 이해하자면 오히려 학문적 연구와 법적 사고력의 배양 이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고시학원으로 변질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더 나아가 법조 시장의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2) 일본 법과대학원 모델

노무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법학교육과 법학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이 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었다.¹⁷⁾ 2004년 4월에 도입된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삼아 이를 일본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사법개혁 및

16) 최대권, 앞의 책, 59면.

17) 일본의 법과대학원에 관해서는 스즈키 켄, 권경은 (옮김),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성공하였는가?”, 『법학논고』(경북대) 제32집, 2010, 43-62면 참고. 우리 법학에 미친 일본 법학의 영향에 관해서는 양천수, “법학 연구의 역사: 학문의 전통과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안암법학』제69호, 2024, 339-391면 참고.

법학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의 로스쿨 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법과대학원 제도로 받아들였다. 사법개혁에 관해 보수적인 일본이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당시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이에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¹⁸⁾

그러나 일본의 법과대학원과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¹⁹⁾ 첫째,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는 달리 일본은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법과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우리와 달리 일본은 법과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의 법학부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였다. 이로 인해 이른바 명문대의 법학부가 존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례라면 도쿄대학 법학부와 법과대학원이 병존하게 되었다.²⁰⁾ 셋째, 이의 연장선에서 법과대학원 교육과정을 법학기수자 과정과 법학미수자 과정으로 구별하여 이원화하였다. 전자는 2년 과정으로, 후자는 3년 과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넷째,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법과대학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때에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¹⁾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과 일본의 법과대학 체제를 절충적으로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혁신보다는 개선을 지향하는 일본의 성격이 여기에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특히 법과대학원 준칙주의와 예비시험으로 인해 일본의 법과대학원 체제는 실패에 직면하였다. 일단 법과대학원 준칙주의로 인해 법과대학원이 ‘난립’하게 되었다.²²⁾ 그뿐만 아니라 신사법시험에서 예비시험 출신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점점 유명무실해지게 되었다.²³⁾ 일본이 법과대학원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법학부를 존치하게 되면서 결국 법과대학원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씁쓸한 결론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18)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경과와 내용”, 『법과 사회』 제24호, 2003, 9-53면; 김창록,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 2004, 278-323면 참고.

19) 이에 관해서는 스즈키 켄, 앞의 논문, 43면 아래 참고.

20) 반대로 일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은 대학이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흥미롭게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필자는 2008년 여름 일본 법과대학원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고베에 자리한 관서학원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관서학원대학 관계자가 놀라움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21) 신사법시험은 우리의 변호사시험에 해당한다.

22) 물론 법과대학원이 난립한 것인지는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기보다는 신사법시험 합격 정원과 대비하여 비로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본래 예상보다 신사법시험 합격 정원이 대폭 확대되지 않게 되면서 전국 법과대학원이 난립하게 되었다는 평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23) 이를 지적하는 김창록, “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법학논총』(전남대) 제39권 제3호, 2019, 1-36면 참고.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이상적 모델

(1) 개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작동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5년인 현시점까지 외견적으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입된 이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사라진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신사법시험 합격률 논란으로 자진 반납 등이 이루어지는 일본의 법과 대학원과 달리 현재까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교육 현장에 무탈하게 자리매김한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이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다.²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때 본래 설정했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2) 법이 정한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정법적 근거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교육이념에서 발견된다. 제2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에는 목적 합리성(Zweckrationalität)에 바탕을 둔 ‘목적/수단’ 구별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법률가의 업무를 “법률서비스”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2조는 교육이념이 지향해야 하는 세 가지 방향을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행되는 법학교육은 첫째,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

24) 물론 이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를 근거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교육이념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²⁵⁾ 기초법학 과목, 기본법학 과목, 전문법학 과목, 실무법학 과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는 상당히 이상화된 모델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두 역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상화된 모델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전문적인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 요컨대 이상화된 모델은 구체적인 실무 능력과 고도로 전문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것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정한 3년이라는 무척 제한된 기간에 실현해야 한다.

(3) 이상화된 모델의 수정

그러나 이처럼 이상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기존 법과대학 및 이와 결합한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령 기존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법과대학 4년에 사법시험 준비 기간 2-3년이 추가되었다. 이에 더해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야 했다. 9-10년의 기간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제 몫을 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적으로 예정하는 3년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이에 관한 현실적 대처방안으로 다음이 제안되었다. ‘지식/방법’이라는 구별을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지식보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thinking like a lawyer), 달리 말해 법적 분쟁을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⁶⁾

25) 이를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양천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법론: 기초법학을 예로 하여”, 『사회과학연구』제27집, 2008, 63-87면 참고.

26)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에 관해서는 프레데릭 사워, 김진우 (옮김),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법적 추론 입문』, 길, 2019 참고. 이를 법학적성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양천수, 『로스쿨과 법학교육』, 피앤씨미디어, 2025, 158면 아래 참고.

Ⅲ.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위기론 검토

1. 법학교육의 실행 요소

논의의 출발점으로 법학교육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법학교육이 실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²⁷⁾

첫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요소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으로서 법학교육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기본 설계도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잘 설계되어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바로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가 교육적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이 사실상 교육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바로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둘째,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필요하다. 같은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담당 교원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교육과정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이나 평가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원의 교육적 능력은 교원 임용 이전에 이미 갖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 교수활동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원 임용 후 교수 활동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은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교원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 법학교육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학생이 교육과정에 진입해 법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입학이라는 제도로 구현된다. 따라서 입학에 관한 설계와 규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는 일종의 진입규제가 된다.

넷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물적 환경이 필요하다. 법학교육이 실제 공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상 세계에서 진행되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공간적·기술적 환경 또는 매체(media)가 필요하다.

다섯째, 법학교육이 본래 목표한 데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거버

27)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²⁸⁾ 이러한 거버넌스는 크게 두 가지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진입규제 기능과 평가 규제 기능이 그것이다. 진입규제 기능의 대표적인 예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능을 들 수 있다. 평가 규제 기능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법학교육,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 실행하는 법학교육이 본래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법학교육 위기론

(1) 법학교육 위기에 관한 판단 근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 발표가 내세우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타당성을 획득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사실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가 그것이다. 사실적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 자료이다. 이론적 근거는 사실적 근거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진단이다.

1) 사실적 근거

a) 법학교육의 구성 요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적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교육이 진행되려면 다음 요소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교원, 학생, 물적 환경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법학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은 이러한 요소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b) 학생과 물적 환경의 문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의 현 상황을 볼 때 학생이나 물적 환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²⁹⁾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문제가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28)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321-338면; 정용남, “ICT 거버넌스와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2017, 167-218면 등 참고.

29)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다.

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교육 과정과 교원에서 발생할 것이다.

c) 교육과정 문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본래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표현된다. 말하자면 폐강이 속출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학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 현실은 어떨까? 현재 교과목 폐강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면한 큰 문제이다. 이때 폐강은 변호사시험 비중이 없거나 낮은 교과목에서 발생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른바 비시험과목인 기초법학 과목이 폐강된다. 이어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인 전문법학 과목 중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과목이 폐강된다. 지식재산권법이나 세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d) 교원 문제 검토

교과목 폐강 문제는 교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폐강이 속출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신규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을 담당하던 교원이 퇴직하면 이에 관한 후속 인사,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전문법학 교원에서도 확인된다. 학생들의 선택을 그다지 받지 않는 전문법학을 담당하는 교원이 퇴직하는 경우 이를 충원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렇게 교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와 그다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오늘날 상당수의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부분 적자 예산으로 운용되기에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본래 설정한 교육목표와 법학전문대학원이 실제 현실에서 설정한 목표를 비교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가 설정한 교육목표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현실적

교육목표를 비교함으로써 이론적 판단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법학교육 위기론에 관한 온도차

앞에서 살펴본 사실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를 고려하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법학교육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온도차가 없지 않다.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 할지라도 어떤 교과목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이에 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1) 기초법학·전문법학 교원의 평가

매 학기 폐강 위험과 마주해야 하는 기초법학·전문법학 교원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증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담당하는 교과목이 폐강되면 당장 전임 교원에게 부과된 책임시수를 채우기 어렵다. 이는 담당 교원에게 여러 불이익이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담당 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체계에서 존재 의미가 약해진다. 이는 담당 교원의 인격적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교원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격적·직업적 존재 의미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실무법학 교원의 평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에서 실무법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는 실무법학 교과목도 학생들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수강한다. 요컨대 실무법학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그 점에서 실무법학 교원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법학교육과 실무의 간극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 덕분에 좁아지기에 법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

3) 기본법학 교원의 평가

그러면 기본법학 교원의 평가는 어떨까? 아마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기

본법학을 담당하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기본법학 가운데 어떤 교과목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법학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교과목은 예나 지금이나 민법학 교과목이다. 민법학은 기본법학 가운데서도 기본이 되기에 그 위상이 매우 높다. 변호사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기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수강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최근 민법학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법학 간의 구별이 약해진다. 민법학의 경우에는 실무 출신 교원도 법학박사 학위를 가진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민법학에서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³¹⁾

이에 반해 형법학에서는 일찌감치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이때 위기론은 주로 이론 형법학에서 제기되는 편이었다. 이에 반해 실무 형법학 담당 교원은 형법학이 문제라는 이해를 그다지 보이지 않는 편이었다. 말하자면 형법학 내부에서 이론법학과 실무법학 사이에 온도차가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론 형법학을 담당하는 교원은 주로 범죄체계론을 중심으로 하는 형법총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범죄체계론을 좀 더 정치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반해 실무 형법학을 담당하는 교원은 형법각칙, 그것도 실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형법각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학문적 인식관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형법학 교육에서는 형법총론, 바꿔 말해 범죄체계론의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비례하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형법각론의 비중이 제고되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주로 형법각론과 특별형법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에 이론 형법학자와 실무 형법학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나오는 것이다. 이론 형법학자가 볼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문제로 평가되는 데 반해 실무 형법학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민법학의 경우와는 달리 형법학에서는 실무 출신 교원들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학술 논문 생산도 민법학보다는 형

30) 이는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학에서 두드러진다.

31) 다만 민법학자인 양창수 교수가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다. “그 사이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나는 그것이 그 사이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 온 법학교수들의 학문적 역량을 다 흡수해서 고갈시키고 또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일에 소홀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 그런데 이제 이 교육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하고 또 제대로 뿌리박게 하려면 대학교수들은 아마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양창수, 『민법연구』제9권, 박영사, 2007, 서문(ii).

법학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다. 이론 형법학자가 볼 때 이는 분명 형법학의 위기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실무 형법학자는 이러한 경향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현상에 대한 관찰 방식이 다른 것이다.

(3) 검토

이처럼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어떤 인식관심(Erkenntnisinteresse)을 지니는가에 따라 관찰 결과가 달라진다.³²⁾ 일반화의 오류를 감수하면서 단순하게 요약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주장에는 ‘기초법학자 > 전문법학자 > 이론형법학자 > 이론민법학자 > 실무법학자’ 순으로 공감을 표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가 잘 보여주듯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본래 목표한 대로 진행되려면 기초법학과 실정법학, 기본법학과 전문법학, 이론법학과 실무법학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교육 및 연구될 필요가 있다. 만약 편향적으로, 특히 변호사시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배제’의 논리에 따라 교과목이 운영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 궤도에서 벗어나 파행으로 치달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법과대학이 사법시험을 위한 고시학원이 아니어야 했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을 위한 고시학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점을 고려하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은 위기 및 파행과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IV.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점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현실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흔히 보여주듯이 이론적 차원에서 이상화된 모델을 사회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특히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실제로 실행되면서 교육과정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2) 인식관심 개념에 관해서는 Jürgen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M., 1968 참고.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초반에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겐 출범 초기 변호사시험 합격을 둘러싼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몫하였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초기에는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³³⁾

이와 더불어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에 선고한 2009헌마608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 병행제도 및 예비시험 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33)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로스쿨과 법학교육』, 피앤씨미디어, 2025, 90면 아래 참고.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 본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노력에 힘입어 법학전문대학원은 출범 초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순항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점차 하락하고 이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면서 교육과정의 실제 현실이 법학의 교육과 연구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법학교육과 법학 모두를 위기로 내모는 현실로 치닫고 있다.³⁴⁾

(2) 변호사시험 종속화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⁵⁾ 사법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법학교육이 황폐화되었던 법과대학 교육과정의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이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가령 필수 과목인지 아니면 선택 과목인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수강 선택을 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를테면 민사법이나 형사법 교과목은 변호사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에 이들 과목은 수강 선택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우선적인 선택 대상이 된다. 그 반작용으로 기초법학처럼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경우나 세법 또는 지식재산권법처럼 선택 과목에 불과한 경우 폐강의 위험에 직면한다.

둘째,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사이에 사실상 서열, 즉 ‘선택/배제’의 우선순위가 형성되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이 변호사시험에 속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 즉 시험과목과 비시험과목으로 구별되면서 전자는 학생들에 의한 선택의 대상으로, 후자는 배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34) 아래의 서술은 양천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법제 개선 방안”, 『인권이론과 실천』 제36호, 2024, 87-108면을 주로 참고하였다.

35) 이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를 변용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II, Frankfurt/M., 1981 참고.

시험과목에 속하는 때에도 해당 교과목이 필수 과목인지 아니면 선택 과목인지에 따라 다시 ‘선택/배제’의 구별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분량의 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일견 합리적인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보이는 서열, 즉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전문법’이라는 서열이 형성되었다.

(3) 판례의 비중 강화

판례가 변호사시험의 정답 선택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교육적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변호사시험 종속성이 심화하면서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학교육 및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판례가 변호사시험을 구성하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의 정답 판단 기준이 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과목, 이른바 민사법, 형사법, 공법 같은 시험과목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판례, 특히 판례의 핵심 요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법학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다.

물론 판례가 법학교육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³⁶⁾ 법학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법학은 일차적으로 법적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하는 실천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토의 출발점이 되는 현재 있는 법(de lege lata)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때 판례는 실정법과 더불어 현재 있는 법으로 중요하게 고려된다.³⁷⁾ 현재 사회에서 어떤 유형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논증하는지를 파악하려면 판례를 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에서 판례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판례가 현재 있는 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에 과도한 규범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러한 판례의 결과를 법적 도그마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판례도 언제나 변경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판례가 대상으로 한 법적 분쟁의 사실

36) 이에 관해서는 무엇이 판례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가령 단순한 ‘재판례’와 ‘판례’를 구별하는 견해도 제시된다. 이에 관해서는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15, 154면 아래 참고. 판례 자체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윤진수, 『판례의 무게』, 박영사, 2020 참고.

37) 판례를 법원으로 보는 견해로는 양천수, “판례의 법원성 재검토: 법이론의 관점에서”, 『사법』 제52호, 2020, 431-465면 참고.

38)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윤진수, 앞의 책 참고. 이를 법과 시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양천수, “법과 시간: 판례 변경의 필요성과 기준을 예로 하여”, 『영남법학』 제57호, 2023, 187-216면 참고.

관계나 판례가 사용한 논증보다 결과 그 자체만을 중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판례를 다룰 때는 판례가 도달한 결론 그 자체보다는 다음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판례가 어떤 유형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러한 분쟁의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판례가 어떤 이익을 고려하고 형량하는지, 이러한 이익 형량을 어떻게 법적 언어로 전환해 논증으로 표현하는지, 이러한 판례의 법적 논증이 지금 시점에서든 여전히 유효한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법학교육에서 판례가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변호사시험 적합성이나 시간의 제약이라는 이유로 인해 판례의 결론이나 핵심 요지만이 효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 합치하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 가동했던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설정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모델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는 법적 지식보다는 법적 사고 능력이나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식이 아닌 방법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판례 역시 ‘분쟁에 관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4) 실무교육의 비중 강화

변호사시험, 특히 기록형 시험과 검찰 임용 시험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실무교육이 과도하게 강화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다만 이때 무엇이 실무교육인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구별할 것인지, 이의 연장선에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론 교과목과 실무 교과목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³⁹⁾ 이에 관해 이론교육/실무교육 이분법 및 기존의 이론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⁰⁾

“많은 사람이 현재의 법학교육은 이론(理論)에 치중하고 실무(實務)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비판은 이론/실무의 이분법(二分法)에서 출발하는 점에 기

39) 이는 마치 상법학에서 무엇이 상행위인가에 관한 문제와 유사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박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제151호, 2015, 301-354면 참고.

40) 양창수, “법학교육의 문제점: 민법교수의 입장에서”, 『민법연구』 제4권, 박영사, 1997, 62면.

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현재 법학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소위 '이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앞서 본 예에서 보자면, 착오의 의의, 종류, 요건, 효과 등등에 관한 추상적 법명제(抽象的 法命題)들을 강의실에서 그대로 다시 말하고 학생들이 하여금 이것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 소위 '이론'의 '교육'인가요? 또는 비유하자면, 낱고기를 씹지도 아니하고 삼키도록 하고 시험지 위에 소화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쏟아 놓게 하는 것이 '이론교육'인가요?

현재의 법학교육에서 문제인 것은 그것이 '이론'을 가르키는가, '실무'를 가르치는가 하는 교육대상(教育對象)의 점이 아니라,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납득시키고 그것이 실제의 분쟁에서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전달하는가 교육내용(教育內容)의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법학교육은 주로 교과서에서 쓰여져 있는 추상적 법명제들을 보다 추상도(抽象度)가 덜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말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紛爭)에 어떻게 관련되며 그 분쟁(紛爭)의 법적 해결(法的 解決)(즉 권리의무의 확인)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지침(指針)을 주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그 문제의 태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언명이 시사하는 것처럼 판례 교육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듯이 실무교육 자체를 비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로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교육과 실무 사이의 괴리가 언급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⁴¹⁾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이러한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도 지향하였다. 바로 그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는 법률정보 조사나 법문서 작성 등과 같은 필수 실무과목이 편성 및 개설된다.

하지만 실무교육은 법학 이론교육의 토대 위에서 성립해야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칸트의 유명한 언명을 빌려 말하면 실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론교육은 공허하고 이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실무교육은 맹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실무교육이 진정으로 구현되려면 실무 수습 과정처럼 실제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교육처럼 말이다. 그러나 부속 로펌을 갖추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교육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과목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 않다.

41) 이를 지적하는 경우로는 양창수, 위의 논문, 53면 아래 참고.

(5) 새로운 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 약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마주하는 이러한 문제는 여러 후속 문제를 야기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법률가 양성과 연결되고 법률가 양성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구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교육만이 떠안는 문제는 아니다.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 파급될 위험이 크다. 아래에서는 그중 구체적인 문제 세 가지를 언급하겠다.

1) 새로운 법적 문제 대응 역량

변호사시험을 전제로 하는 필수 과목, 판례, 실무교육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전문법적 문제에 대처하고 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재 대형 로펌들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등이 유발하는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⁴²⁾ 그렇지만 가령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나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사하듯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롭게 던지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적절하게 키우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⁴³⁾

물론 3년이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문법적 문제에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적·물적·시간적 측면에서 자원의 한계를 지닌 법학전문대학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적 지식이 아닌 법적 사고 능력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날 새롭게 출현하는 전문법적 문제에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칠 수는 있다. 전문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법적 역량은 기본법학의 개념이나 체계, 원리 등을 각 기능적 전문

42) 데이터에 관해서는 이성엽 (편),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참고.

43)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공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식 약칭은 ‘인공지능법’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공식 전문은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공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 관해서는 이성엽 (편), 『생성형 AI와 법』, 박영사, 2024, 151면 아래; 양천수, 『AI, 혁신과 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참고. 인공지능기본법에 관해서는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8권 제3호, 2024, 7면 아래 참고.

영역에 적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사실이 그렇다면 오늘날 새롭게 출현하는 전문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다음과 같이 키울 수 있다. 기본법학에서 교육한 개념이나 체계, 원리 등을 개별 전문 영역에 응용할 수 있는 법적 사고 능력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사고 능력은 기본법학에 더해 기초법학에 관한 지식과 사고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함양할 수 있다. 법적 사고 능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법학방법론이나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과 같은 기초법학이기 때문이다.

2) 리걸테크의 도전

오늘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무엇보다도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나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을 활용하는 리걸테크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새로운 도전이자 문제가 된다.⁴⁵⁾ 딥리서치(Deep Research) 인공지능이 보여주듯이 매 순간 진행되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측보다 점점 더 빨라진다. 심지어 특이점이 멀지 않았다는 진단도 나온다.⁴⁶⁾ 이에 따라 법률 GPT처럼 실제 법률 실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성능은 나날이 향상된다. 인공지능과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해지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처럼 인간 법률가가 과연 필요한지에 의문을 던진다. 과거에는 공상과학소설(SF)에서나 그려졌던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전문직 영역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중심주의, 실체세계 중심주의, 유체물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⁴⁷⁾

3) 법치주의의 위기

더 큰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을 포함하는 법학교육의 위기가 법치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법 자체가 수범자에게 내면화되어야 한다. 법에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44) 이를 보여주는 예로서 金井高志, 『民法でみる知的財産法』, 日本評論社, 2012 참고.

45) 리걸테크에 관해서는 사사키 타카마사, 안진우·정인호·조현준 (편), 『리걸테크: 법률비즈니스의 미래를 바꾸는 신기술』, 법률신문사, 2018 참고.

46) 이를 보여주는 레이 커즈와일, 이충호 (옮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비즈니스북스, 2025 참고.

47) 현대사회는 인간중심주의, 실체세계 중심주의, 유체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로는 양천수,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인간연구』 제46호, 2022, 37-75면 참고.

서는 준수해야 하는 법을 수범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 관해 근거 없는 편향이나 선입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법에 관한 문해력, 즉 법적 리터러시(legal literacy)이다.⁴⁸⁾ 그리고 이러한 법의 문해력은 오직 법학교육을 통해서만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법학교육이 위기를 넘어 해체되면 법치주의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법학교육의 위기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만의 문제, 즉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

V.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1. 변호사시험의 탈종속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문제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면 이 같은 교육과정을 변호사시험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달리 말해 변호사시험 종속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정상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기초법학, 기본법학, 전문법학, 실무법학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균형 있게 편성 및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기초법학 교과목의 정상화

우선적으로 기초법학 교과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법학은 법학, 그중에서도 실정법학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기초법학은 그 특성상 법학이 다른 인접 학문과 구조적으로 결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기초법학을 매체로 하여 전체 학문체계 안에서 법학이 철학, 사회학, 역사학, 정책학, 경제학 등과 연결된다.⁴⁹⁾ 이에 반해 기초법학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법학전문대학원

48) 법적 리터러시에 관해서는 内田貴, 『高校生のための法学入門: 法学とはどんな学問なのか』, 信山社, 2022 참고.

49) 이에 관해 기초법학이 실정법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지 아니면 실정법학과 다른 인접 학문 ‘사이에 있는’ 학문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법정책학이나 법경제학, 법심리학, 젠더법학처럼 새로운 기초법학 영역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된다. 과연 어디까지 기초법학에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에서 혜택을 받는다. 수강 신청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상적으로 설계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기초법학이 중요한 교과목으로 설정되었다. 기초법학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교육과정 현실에서는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에서 기초법학은 학생들의 선택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기초법학 교과목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초법학 교과목을 전문법학 교과목처럼 변호사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전문법학 교과목군과 기초법학 교과목군으로 외연이 확장된다. 이 경우 기초법학 교과목은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기초법학 교과목을 필수 실무과목처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선택적 필수 교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초법학 교과목 중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지만, 필수 교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도 구현할 수 있다.

3. 전문법학 교과목의 정상화

전문법학 교과목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기초법학과 전문법학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문법학은 변호사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전문법학 교과목은 기초법학 교과목과는 달리 학생들의 선택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실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기초법학과 마찬가지로 전문법학 교과목 역시 선택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수 전문법학 교과목에 학생들의 선택이 집중되면서 실제 법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법학 교과목, 가령 조세법이나 지식재산권법 등이 선택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실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합치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끊임없이 출현한다. 데이터나 인공지능, 정보보안, 생명공학에 관한 법적 문제가 그것이다.⁵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

50) 그중 생명공학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권복규·김현철·배현아,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참고.

성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전문법학 교과목이 개설 및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소수의 전문법학 교과목만이 그것도 형식적으로 선택 및 개설될 뿐이라면 이는 분명 문제가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법학 교과목이 변호사시험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 대상이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이수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요컨대 선택 과목 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4. 실무법학 교과목의 비중 축소

현재 과도하게 강조되는 실무법학 교과목의 비중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실무법학의 의미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전의 법과대학·사법시험 체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론과 실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실무를 고려하지 않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필수 실무과목을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등 실무법학 교과목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현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출현하였다. 첫째, 변호사시험에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록형 시험이 도입되면서 실무법학 교과목 역시 변호사시험에 종속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실무법학 교과목 역시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변화해 갔다.

둘째,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실무법학 교과목, 예를 들어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경찰실무와 같은 교과목이 추가되고 이러한 과목들이 사실상 필수과목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검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검찰이 주관하는 검찰실무, 검찰실무심화와 같은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재판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은 민사재판실무나 형사재판실무와 같은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내부 교과목의 선택지가 줄어들는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에서 개설하는 선택 과목은 수강 신청에서 선택되지 못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속출한다.⁵¹⁾

51) 이러한 경향은 법원의 형사재판실무, 검찰의 검찰실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뚜렷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변호사시험에서 실시되는 기록형 시험의 범위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외부 기관에서 파견 형식으로 진행되는 실무법학 교과목 운영을 축소하거나 그게 아니면 변호사시험 실시 이후로 개설하는 것이다.

VI.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

1. 개선 방법의 기본 방향

(1) 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된 것은 어찌 보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향한 경쟁이 격화하면서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의 기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과목 중심 + 판례 중심 + 실무 중심 공부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전략적 선택을 비판만 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기준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이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선적인 관심과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게 합리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으로 인정된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유능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어찌 보면 자유롭게 보이는 이러한 선택이 점점 살아 있는 규범이자 제도로 실효성(Wirksamkeit)을 발휘한다는 점이다.⁵²⁾ 사회의 유행 현상이 보여주듯이 특정한 방향을 지향하는 선택이 많아지면 이는 더욱더 많은 선택을 끌어들이는 자기 증식화의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자기 증식화에 따라 이러한 선택을 따라가는 게 타당하다는 일종의 규범적 기대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선택을 거부하기 쉽

52) 실효성과 효력 개념에 관해서는 양천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본 법규범의 효력근거: 법철학의 관점에서”, 『법과 사회』 제38호, 2010, 39-65면 참고.

지 않다. 사회적으로 결정된 선택과 다른 선택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이에 따른 위험 역시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경제학 연구가 보여주듯이 사람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보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선호한다.⁵³⁾

따라서 이처럼 자기 증식화의 힘, 즉 실효성을 발휘하는 특정한 선택에 대항하려면 개인의 자율에 의존하는 선택을 넘어서는 힘, 즉 법적 제도화의 힘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실효성을 넘어서실 수 있는 ‘효력(Geltung)’을 가진 법적 제도화의 힘이 필요하다. 요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왜곡하는 살아 있는 규범적 기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통한 개선이라는 제도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절차주의적 규제

변호사시험의 식민지화에 대항할 수 있는 규범적 힘, 즉 효력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부여하려면 이를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규제 이론(regulation theory)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규제 방향 또는 규제 원칙을 교육과정 관련 법령에 적용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⁵⁴⁾ 이에는 절차주의적 규제(procedural regulation), 바꿔 말해 ‘규제된 자율규제’를 규제 원칙으로 제안할 수 있다.⁵⁵⁾ 여기서 절차주의적 규제란 자율규제와 자율규제 혹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를 적절하게 혼합 및 적용하는 규제를 말한다.⁵⁶⁾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자율규제 또는 직접 규제가 적합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직접 규제 일변도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규율하면 오늘날처럼 급변하고 복잡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외부 환경에 법학전문대학원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율규제를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전적으로 위탁하면 교육과정이 현

53) 행동경제학에 관해서는 리처드 탈러, 박세연 (옮김), 『행동경제학: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선택 설계의 힘』, 웅진씽크빅, 2021 참고.

54) 규제 이론에 관해서는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진화”,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2019, 154-172면 참고.

55) 절차주의적 규제에 관해서는 Graf-Peter Calliess, *Prozedurales Recht*, Baden-Baden, 1999; Gunther Teubner, “Reflexives Recht: Entwicklungsmodelle des Rechts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in: *ARSP* (1982), S. 18 ff.; Gunther Teubner, *Recht als autopoietisches System*, Frankfurt/M. 1989, S. 118 ff. 등 참고.

56) 이 가운데 자율규제에 관해서는 Kathleen D. Vohs/Roy F. Baumeister (ed.),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Third Edition, The Guilford Press, 2017 참고.

재 처한 문제, 즉 변호사시험의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교육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맡긴 부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절차주의적 규제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 필요한 것이다.

절차주의적 규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본래의 교육이념에 맞게 회복하기 위해 어떤 교과목이 반드시 편성 및 개설되어야 하는지에 필요한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이나 그 시행령과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편성 및 개설해야 하는 교과목의 외연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면 이는 절차주의적 규제를 넘어 직접 규제 또는 타율 규제로 변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령에 힘입어 일반적·추상적으로 근거가 확정된 교과목의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권한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자율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다.

2. 법령 개선 방향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법」과 그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에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법령으로 정해 법학교육과 연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법학과 전문법학 교과목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1)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 법정화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 달리 말해 교육과정에서 법조인 양성을 위해 가르쳐야 할 교과목을 구조화한 후 이를 법령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과목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교과목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법학 과목, 전문법학 과목, 기초법학 과목, 실무법학 과목이 그것이다.

기본법학 과목이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법학 과목이란 실정법학의 기본이 되는 법학의 과목을 지칭한다. 이는 과거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에 해당하였다. 현재 이들 과목은 변호사시험의 필수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과목은 실정법학 지식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는 현행 변호사시험처럼 필수 시험과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전문법적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전문법학 과목으로는 「노동법」, 「환경법」, 「지식재산권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국제법」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는 변호사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이라는 전문법학의 의미와 지위는 이미 형해화되었다. 따라서 이를 정상화하려면 전문법학 과목을 아래에서 제시하는 선택적 필수 교과목의 대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기초법학 과목으로는 법철학, 법조윤리, 법사학, 법사회학, 법학방법론, 젠더법학, 인권법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법조윤리만이 현재 필수 과목이자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기초법학 과목 역시 선택적 필수 교과목의 대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기초가 되는 실무법학 과목으로는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들 수 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정책적 측면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실무과목을 이러한 필수 실무과목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과 그 시행령은 5개의 실무법학 과목만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논증하듯이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를 도입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방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변호사시험 종속성을 완화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2)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 도입

나아가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는 절차주의적 규제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된다. 한편으로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는 필수 교과목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한 교과목의 편성 및 개설을 강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외연이 좁지 않은 교과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를 편성 및 개설하게 할 것인지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러한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강제적인 필수와 자율적인 선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⁵⁷⁾

57) 그 점에서 이는 ‘조건화된 자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교과목으로는 두 과목을 언급할 수 있다. 전문법학 교과목과 기초법학 교과목이 그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규율하는 법령은 이러한 두 가지 교과목, 더욱 정확하게 말해 ‘교과목 영역’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편성 및 개설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요컨대 전문법학 및 기초법학 교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들 교과목이 최소한 몇 개 이상 개설되어야 하는지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타율규제가 전문법학 및 기초법학 교과목에 적용된다.

다른 한편 ‘선택적’이라는 수식어가 시사하듯이 전문법학 및 기초법학 교과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이 필수 과목의 선택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스스로 지닌 역량과 강점 및 약점, 내부적·외부적 환경을 참고하여 선택적 필수 교과목의 선택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정한 특성화 목표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했다면 인권법학을 기초법학의 선택적 필수 교과목 가운데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쟁점

그 외에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법조윤리와 기초법학을 연계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조윤리를 기초법학 교과목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기초법학 전공자가 법조윤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법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이 현재 담당하는 실무법학 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같은 실무법학 교육을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실시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법령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을 맺는 법령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법」과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법령을 어떻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1)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 방향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살펴본다.

1)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9조 개정안

이에 관해 우선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9조제1항을 언급할 수 있다. 제19조는 “학점을 규율하는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대통령령에 완전히 위임하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요청되는 최소 필요 사항을 제19조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는 기초법학 과목의 학점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기초법학 과목의 학점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학점, 이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현행 제19조제2항의 규정 내용을 제2항 신설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다.

[표 1]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9조 개정안

- 제19조(학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는 기초법학 과목의 학점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 ③ 제2항의 기초법학 과목의 학점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학점, 이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2)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0조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제20조에서 교육과정을 규율한다. 우선 제2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

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함을 규정한다.

다음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야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이라는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법 본문에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 이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2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기본법학 과목, 기초법학 과목, 전문법학 과목, 실무법학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0조 개정안

-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기본법학 과목, 기초법학 과목, 전문법학 과목, 실무법학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 ③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0조제2항이 보여주듯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선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법」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 3]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4]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안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적 법률지식에 관한 교과목(신설)
2. 전문적 법률지식에 관한 교과목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청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 중 3과목(신설)
3.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가치에 관한 교과목으로 법조윤리 및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청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초법학 교과목 중 2과목 이상(신설)⁵⁸⁾
4.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 재판, 실습과정 등 법조인 전문기술에 관한 교과목(신설)

(3)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면 변호사시험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에 관해 두 가지 방안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전문법학 교과목의 선택적 필수화

첫째,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전문법학 교과목을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 과목을 폐지하는 쪽으로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8) 이 개정안이 규정화되면 현행 법조윤리 시험은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조윤리 시험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으면 폐지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 방식은 서술형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록형 시험 방식 개선

둘째, 변호사시험에서 실시되는 실무 능력 평가 방식의 개선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시험에 관해 이른바 ‘기록형 시험’이라는 방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실무 능력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볼 때도 독특한 기록형 시험으로 인해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에 대비하는 교과목을 12-15학점 이상 개설해야 한다. 이는 90학점이라는 졸업 학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이에 더해 사실상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의 실무과목을 고려하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실무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 때문에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법학에 관한 기본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자 문제다. 이는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른 교육과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이를 변호사시험법 제8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방안은 기록형 시험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공법 기록형, 민사법 기록형,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필수 실무과목, 즉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그것도 1개 교과목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형 시험을 개선하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목 개설을 축소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다양한 전문법학 과목과 기초법학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

이러한 방향에 맞게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⁵⁹⁾ 이에 관한 규정으로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8조와 제9조가 그것이다.

3) 「변호사시험법」 제8조 개정안

변호사시험의 방법을 규율하는 제8조는 현재 다음과 같이 정한다.

59) 물론 두 번째 방향의 개선은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의 정책 변경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개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표 5]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제3항이다. 제3항이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인 전문법학 과목의 시험 방법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법학 과목에 선택적 필수 교과목 제도를 적용하면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실무 능력 평가의 방식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6] 「변호사시험법」 제8조 개정안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논술형 필기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하는 필수 실무 과목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변호사시험법」 제9조 개정안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규율하는 「변호사시험법」 제9조는 현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 7]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제9조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표 8] 「변호사시험법」 제9조 개정안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실무과목(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과목을 말한다)(신설)
- ②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VII. 맺음말

이 글은 현재 우리 법학교육과 법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한 중대한 이유 하나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현실에서 찾았다. 본래 의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운용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현실이 우리 법학교육과 법학이 마주하는 비극의 탄생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해관계자 및 규제 당국의 공감과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일 이 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반형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편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국제이사)

1. 로스쿨 제도의 다원성과 획일화: 표방된 다양성, 실제의 한계

로스쿨 제도는 도입 당시 다양한 전공·경험의 인재 육성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으나, 실제 제도 운영과 교육의 현장에서는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일목표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가 획일적인 법률 전문가로 수렴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발제의 대부분이 교육과정 혁신과 변호사의 전문화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주요 정책 목표와 구체적 대안이 “변호사시험 합격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다.

특히 입학 단계에서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로스쿨 내 진로지도의 내용은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의 사회진출 경로나 차별화된 역량, 전문직 이외의 사회·제도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성공적 로스쿨’의 정의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으로 기계적으로 환원되어,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2. 불합격자와 사회 역할의 다양화: 제도 개선의 사각지대

또 하나의 맹점은 로스쿨 졸업생 중 상당수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갖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원·준전문가, 법 교육, 준법지원, 입법보좌, 법무행정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 지원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조차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고착된 결과다.

OECD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면, 법조 실무 이외에도 법률지식을 응용해 활약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로와 공공분야 진출 경로(예: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법

를 교육자 등)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우리 로스쿨도 불합격 인력의 진로다각화, 사회적 활용,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3. 기초 법학과 심화·전문화 구조의 재설계 필요성

실무능력 강화·전문화 교육도, 실제로는 실무적용력 중심의 단기적 목표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기초 법학의 이론적 탐구와 연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학문적 축적은 어디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 법학, 법 철학 등은 로스쿨에서 ‘억지로’ 가르치기보다 박사과정 등 상위연구단계에서 심화되는 게 학문적 분업, 전문성 심화에 훨씬 효과적이다. 로스쿨은 실무 기반 교육 및 사회적 역할 실현을, 박사과정은 기초법학 중심의 학술 심화를 담당하도록 하여, 각 단계의 목적과 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획일적 합격생 위주에서 진로 다변화 중심으로 제도·지표 재설정:** 입학생의 전공·경험 다변화가 실제 사회적 다양성, 진로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정책목표, 평가기준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
- **불합격자 진로 지원과 사회적 활용 제도화:** 로스쿨 이수 후 다양한 경로, 직무, 공공분야로의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도입과 교육과정 내 진로·역량 설계를 일상화해야 한다.
- **기초법학의 고도화는 박사·연구과정 중심으로:** 실무교육과 심화연구의 분업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각각의 목적과 역량이 오히려 상승작용을 낼 수 있도록 학제·활용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표방된 로스쿨의 다원성과 실제 제도의 방향 사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혁신, 제도 설계, 정책적 상상력의 폭이 확장되어야 한국 로스쿨의 내실 있는 미래가 가능하다고 본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입시, 교육, 실무 중심 논의 -

김지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1. 문제 제기

오늘 토론의 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입시, 학사운영, 실무교육 등 전반에 대한 개선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우수한 법조인을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가?”

로스쿨은 단지 변호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도입 당시 핵심 목표는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AI로 누구나 손쉽게 판례를 검색하고, 법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단순히 판례를 찾고 암기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뢰 받은 사건에서 법적 쟁점을 추출하고, 적용할 법령을 찾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로스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양적 팽창이 만든 구조적 위기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법조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6년 1만 명을 넘긴 이후, 2014년 2만 명, 2019년 3만 명 그리고 2025년 11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무려 40,703명에 달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OECD 평균 (1,482명)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법조인 수가 법조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조 시장은 급속히 포화하고, 지역은 점점 악화하였습니다.

2008년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입 건수는 7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한 달간 단 한 건도 수입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30만~50만 원의 저가 사건만을 수입하거나, 소장만 제출하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적 관리 없이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한 결과입니다. 로스쿨이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3. 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언

이제 로스쿨 제도는 "얼마나 많은 변호사를 배출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법조인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수진 및 커리큘럼 개편과 학사 관리 엄정화, 그리고 로스쿨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질적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실무가 교육 강화를 위한 교수진 및 커리큘럼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제도는 2009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되며,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로스쿨에서는 리걸클리닉, 실무수습,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등 실무 과목을 통해 현장 경험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 시간과 수업 환경 제약, 무엇보다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 확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전임 교원의 2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어서야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실무 경력 교원이 전체 교원의 30%를 넘었다는 기사¹⁾가 나왔을 정도로 현장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보는 매우 더디었습니다.

2024년 법률신문 보도²⁾에 따르면 25개 로스쿨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있는 실무교수 비율이 역대 최고인 44.5%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일부 로스쿨은 법정 기준조차 간신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실무 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수진 구성 기준을 현행 법정 기준의 두 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교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개편도 시급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급변하고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법률 수요는 한층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수요에 적합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갖춘 법조인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리걸클리닉, 협상·중재 교육, 윤리 훈련 등 다양한 실무 교과목이 단순 이수 요건이 아닌 중심축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가 중심축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엄정한 학사 관리 체계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핵심 철학은 ‘입학 시 선발, 교육을 통한 양성’입니다. 기존의 고시제도와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이며, 엄정한 성적 관리 및 이에 따른 유급 시스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로스쿨의 운영 실태는 애초의 제도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유급자 비율이 전체 입학 정원의 약 10%에 달했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로스쿨에서는 단 한 명의 유급자도 없이 졸업생을 전원 배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0%도 되지 않는 로스쿨조차 학사경고자, 유급자, 제

1) 왕성민, 「법조인, 로스쿨 전임 교원의 30% 넘었다」, 법률신문, 2020.8.20.

〈<https://www.lawtimes.co.kr/news/163061>〉.

2) 이순규, 「25개 로스쿨 ‘실무교수 비율’ 44.5% 역대 최고」, 법률신문, 2024. 2. 18.

〈<https://www.lawtimes.co.kr/news/195980>〉.

적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은 하지만 변호사시험에는 불합격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졸업자 수만 늘리고 실질적인 자격 관리는 소홀히 하는 운영 방식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오탈자 문제까지로도 이어지면서, 해당 로스쿨의 경쟁력까지 함께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시험은 해당 학생이 교육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하고, 졸업시험은 형식적 통과 절차가 아닌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정 수의 엄선된 졸업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로스쿨 간 교육 경쟁력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A대 로스쿨과 최저 기록을 보인 B대 로스쿨의 합격률 편차가 60%p 이상 벌어지며 로스쿨 간 교육 경쟁력의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2018년 발표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누적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C대 로스쿨은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94.02%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D대 로스쿨은 67.78%, E대 로스쿨은 62.6%에 그쳤습니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 어떤 로스쿨은 졸업생 대부분이 법조인이 되는 반면, 다른 곳은 졸업생 3명 중 1명 이상이 장기 미합격 상태에 놓이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학생 역량 차이가 아니라, 로스쿨별 교육 내용, 커리큘럼, 학사 관리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고 안일한 학사 관리로 졸업생만 많이 배출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있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설치 인가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 성과, 실무 교육 이수 실적,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량·정성 평가 시스템이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로스쿨 간 건전한 경쟁과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역량을 갖춘 적정 수의 법조인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로스쿨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4. 종합

로스쿨 제도는 분명 일정 부분 제도화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로스쿨은 제도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엄정한 평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로스쿨 스스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엄선된 졸업생을 배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만 늘리고 탈락자를 양성하는 기관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엄정한 학사관리 체계의 복원과 함께,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의 대폭 확충, 그리고 실무 중심 커리큘럼의 전면 개편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로스쿨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쿨 제도가 설계되어야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법조계 전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구본익 과장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구본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illegible]

[illegible]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이동근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로스쿨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로스쿨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견을 나누어 주신 그리고 고견을 나누어 주실 여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로스쿨 제도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학교의 특성화 분야가 학생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별 서열화는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¹⁾ 소위 ‘오탈자’의 문제나 졸업 후 실무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입 변호사의 고충 역시 특별히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조사관이라는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간 국회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들을 정리하고 개선의 몇 가지 주제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쿨 졸업생의 입장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그간 생각해 온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포럼에서 주어진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입법과 법률안의 연혁

언뜻 생각하기에 로스쿨 제도와 관련된 법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합니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기 쉽습니다만,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위 법률 외에도 「변호사시험법」과 그 외의 몇몇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함께 수행해야만 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이는 소위 ‘반수’ 열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황동진, 「[단독] 로스쿨 입시서 ‘반수 이력’ 금지…위반 땀 최대 ‘실격’」, 『서울경제』, 2025.4.16. (최종 검색일: 2025.1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JMN89>> 참조.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법」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제정 이래 지금까지 특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위 법률은 2007년 제정 이후 형식적으로 여섯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대부분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타법개정이고 실제 그 내용을 바꾼 일부개정은 단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그 개정의 내용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비례를 맞추기 위해 벌칙조항의 벌금형을 인상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2007년 이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된 이후, 제18대 국회부터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개정 시도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²⁾ 대체적인 양상을 바라보면 도입 이후 한동안 구체적인 교육보다는 로스쿨과 학생 구성 등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22대 국회에 이르러서는 학점 이수, 명문화 등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법률안들이 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표 1]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임기만료폐기/계류 중)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1800367	박선영의원	2008.7.22.	• 설치인가 전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 설치인가 시 고려사항으로 지역균형을 추가 • 총 입학정원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직접 규율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함
1801902	정세균의원	2008.11.12.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으로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인가를 선정 • 학생구성의 기준으로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전체 2분의 1이 되도록 함
1804903	주광덕의원	2009.5.20.	• 특별선발전형의 명문화
1811815	이명수의원	2011.5.17.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1906798	이명수의원	2013.9.11.	•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에 법학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의 폐지
1912679	안민석의원	2014.11.26.	•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1912770	서영교의원	2014.12.2.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특별전형 인원을 선발정원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학비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함
2007121	송기석의원	2017.5.31.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를 4명으로 증원
2016202	박광온의원	2018.10.31.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

2) 기재된 법률안 주요내용 중에도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0551	백혜련의원	2019.5.22.	•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시설을 설치
2112957	최혜영의원	2021.10.25.	•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갖추게 함
2122366	안민석의원	2023.5.30.	• 학생선발시 학교폭력/범죄전력 등을 감점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2205038	박대출의원	2024.10.30.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2208575	김준혁의원	2025.2.28.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필요 학점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광고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함 •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 선택과목 시험을 P/F로 변경
2212664	진선미의원	2025.9.3.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2025.

최근 제출된 법률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의 필수과목화는 양천수 교수님이 발제문을 통해 제안해주신 것과 유사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검토과정에서는 학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가능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야만 하는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³⁾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도 규율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편이 오히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수성을 정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시험법」입니다.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로스쿨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변호사시험이 학생들에게 갖는 영향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약 50%라는 참 애매한 합격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과 같이 탈락이 기본적 결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합격률이 낮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의사 국가시험에서와 같이 합격률이 매우 높아 탈락이 이례적이지도 않습니다.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험에 종속되기 가장 좋은 합격률입니다. 한 번의 탈락만으로 주변의 실망과 함께 탈락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부분까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⁵⁾

3)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208575), 2025.6. p.6.

4) 2025년의 합격률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이는 동맹휴학 등 특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시험법」은 2009년 제정된 이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은 변호사 시험 점수 및 석차의 공개와 관련된 것이었고,⁶⁾ 이는 로스쿨의 서열화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아래의 [표2]와 같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 발의된 법률안⁷⁾들은 사법시험과 연결 지어 사법시험을 존속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에는 예비시험의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 상당 비중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를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별하면 그간 제출된 법률안들 중 변호사시험 자체의 내용을 개선하고자 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22대 국회에서는 소위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완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안들이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표 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임기만료폐기/계류 중)⁸⁾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5058	강창일의원	2013.5.22.	•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⁹⁾
1909134	박영선의원	2014.1.23.	• 예비시험 및 대체법학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변호사시험응시자격 부여
1909192	민병두의원	2014.1.29.	•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명시
1909655	함진규의원	2014.3.7.	•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함
1910081	노철래의원	2014.4.7.	•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
1911741	김용남의원	2014.9.18.	• 본인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 선발과 사법연수원 법조인 양성제도를 계속 실시함
1913088	김학용의원	2014.12.16.	•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시험을 존속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1913982	박민수의원	2015.2.13.	• 응시결격사유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5) 개인적으로는 한 해 입학 인원을 일부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합격률을 상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에 비해 로스쿨 교육과정이 길어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6) 변호사 시험 성적의 비공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 결정 및 석차 정보의 공개를 허용한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판결 각 참조; 이미 로스쿨생들 내부에서는 변호사시험 점수를 토대로 본인의 석차가 어느 정도에 위치한 것인지 개략적인 추정치는 있었습니다.

7)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법」의 폐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7년에 있었던 까닭에 생각보다 변호사시험으로 통합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8) 대안반영폐기는 제외한 것이며, 방송통신대학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1915468	오신환의원	2015.6.8.	•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키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함
1917609	정부 제출	2015.11.5.	• 응시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
19017614	조경태의원	2015.11.5.	•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함
2000389	함진규의원	2016.6.21.	•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003923	주승용의원	2016.11.29.	•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007125	송기석의원	2017.5.31.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
2010220	이재정의의원	2017.11.17.	•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11109	오신환의원	2017.12.29.	• 변호사예비시험의 도입
2011986	유승희의원	2018.2.19.	•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019787	김승희의원	2019.4.12.	• 임신 중인 경우 1회당 1년의 유예규정 신설, 임신사실 알면서도 원서 접수 시 적용 배제
2024236	정용기의원	2019.12.10.	• 변호사예비시험의 도입
2024278	김정재의원	2019.12.13.	•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104549	정부 제출	2020.10.16.	•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106328	김남국의원	2020.12.10.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106357	이재정의의원	2020.12.10.	•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110854	이정문의원	2021.6.17.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112800	김남국의원	2021.10.7.	•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함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2115865	김미애의원	2022.6.10.	• 변호사예비시험의 도입
2123933	도종환의원	2023.8.2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의 치료 및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 응시기간 산입 배제
2204288	권칠승의원	2024.9.25.	•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2207634	이재정의원	2025.1.20.	•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208189	박균택의원	2025.2.17.	•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함
2208601	김준혁의원	2025.2.28.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 성적은 시험의 합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2025.

응시기회의 부여와 관련해서, 생계유지나 자녀 양육까지는 예외를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출산이나 일부 중대한 질병 등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는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 등에 대한 고려나 임신의 시점¹⁰⁾ 등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제도개선 취지의 법률안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방송통신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했던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¹¹⁾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¹²⁾과 같은 법률안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초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직장과 병행하는 등 법조인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현재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학사 과정 내부에서의 실무교육을 일상생활과 병행하며 어떻게 충실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¹³⁾ 또한 과거 판사나 검사 등 현직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 파견과 관련하여 「법학전문

9) 과거에는 서울에서만 응시가 가능했었습니다.

10) 일례로 5년의 응시기간 내에 임신이 되고, 출산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0220), 2018.5. p.5).

11) 박준영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10560), 2017.12.1.

12)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107190), 2021.1.6.

13) 자격취득 후 즉시 개업을 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의 실무수습이 실무경험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으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당히 애매한 제도를 갖고 있고, 이에 관하여는 후술합니다.

대학원예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¹⁴⁾이 제출된 바 있는데, 공무원 파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만 공무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검토 견해가 있었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¹⁵⁾

3.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

현재 로스쿨은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유일한 창구이며, 로스쿨 지망생들은 처음부터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을 부담하며 진학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학생들이 처음의 목표대로 ‘법조인’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필수적 소양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법학의 중요성이나 특성화 설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주된 기능과 지원자들의 기대 자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의 교육만으로 졸업 후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의문이 존재했고,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하에 현재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자격취득 후 6개월 간의 필수적 수습기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인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한입니다.

그러나 졸업 이후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열정페이와 소위 ‘블랙팜’의 착취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대안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¹⁶⁾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물론이고,¹⁷⁾ 신규 변호사가 수습기간 도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규직 전환 부담으로 자살한 사례까지 발견됩니다.¹⁸⁾ 실무수습이 균질한 교

14)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예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1808117), 2010.4.7.

1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법학전문대학원예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1808117), 2011.6. pp.4-5.

16) 실무수습 과정에서 신규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특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2년~2024년 수습변호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하여 수습만족도 조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나(권영환, 「수습변호사 처우 개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습 만족도 조사' 실시, 『법조신문』, 2023.10.31. (최종 검색일: 2025.10.31.),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4>>), 이는 구조적인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7) 수습변호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례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판결.

18) 이순규, 「단독」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법률신문』, 2024.10.23. (최종 검색일: 2025.10.31.), <<https://www.lawtimes.co.kr/news/202069>>.

육 수준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서면을 검토받고 법정을 함께 나가 변론을 견학하는 한편,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서면만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로펌이 부탁을 받아 채용을 전제하지 않는 형식적 수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무실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우에 따라 수습기간 후 바로 개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문제점들은 최초 구상했던 것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실무수습이 늘어나게끔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협회와 수습변호사들의 부담은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¹⁹⁾ 졸업 후 실무수습 관련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자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같이 졸업 후 집체교육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많은 국민들의 인식은 개인의 직업적 자격을 위해 국가가 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치 않는 듯 합니다.

김기원 변호사님이 발제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만약 1년간 교육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면, 학기 중 진행되는 리걸클리닉이나 통상 방학에 진행되는 학사과정 내부에서의 인턴 교육과 같은 실무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기초법학, 전문법학에 대한 교육 수준 역시 필수과목화를 통해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졸업 후 실무수습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지금에 비해 상당히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는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로스쿨 전과정에 있어 학생 개인의 부담을 더욱 늘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된 정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등록금 등 부담을 줄이거나 적어도 현재의 수준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면 또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보다 늘릴 수 있다면 - 시간적 기회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 조금이나마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제2항은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특별히 개정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제19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2조(학점)나 법 제2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업연한이나 학점의 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세부 설정과 달리 융통성이나 유동성의 요구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행령 대신 법률을 통해 개정하는 것 역시 국회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 2025년의 현황에 관하여는 안경준, 「‘로펌 취직 100대1 바늘구멍’... 간절함 악용 ‘블랙펌’ 기승도 [심층기획-갈 곳 없는 신입 변호사들]」, 『세계일보』, 2025.8.20. (최종 검색일: 2025.10.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1366?sid=102>> 참조.

4. 나가며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계신 여러 실무자분들이나 직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만, 어느 정도나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살펴 본 법률의 연혁과 법률안들의 내용에 비추어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20년 경 입법조사처에 들어와 작성했던 첫 번째 보고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5년간 무엇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²⁰⁾ 그나마 실무교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간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 국회가 제3자적 견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²¹⁾ 이러한 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정책 포럼이 개최된 것은 분명 다행스럽습니다.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의 내용 또한 로스쿨 제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부디 오늘의 논의가 현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많은 예비 법조인들과 신규 법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그 당시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구체적 내용들은 크게 나누어 ① 실무교원의 확충, ② 필요적 기본과목의 강화 (이는 사실 교육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③ 리걸클리닉의 강화 등이었습니다(김광현·이재영·최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72권, 2020, pp.35-62).

21) 지금까지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제도의 전반적인 환경을 주도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을 검토할 단일한 주무부처가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로스쿨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법조인 양성 및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각 주무부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법률에 기초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염형국 변호사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편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1. 발제문에 대한 총평

가. 법조인 양성과정의 기회균등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

발제 1과 관련하여 소위 ‘검클빅_ 검찰, 로클릭, 빅로펌’ 취업에 경도되어 있는 법조인 양성과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정부 차원의 공익전담변호사 등 공공서비스 직종으로의 진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는 ‘돈스쿨 혹은 음서제’로 일컬어지는 로스쿨에 대한 비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공익전업변호사로 진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생들의 건설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로스쿨 학자금 탕감제도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안되고 논의되었으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로스쿨 제도를 좀더 공익적으로 설계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장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100% 반영하는 입시전형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하지 않으나, 로스쿨 입학생 중 특정학교 비중을 줄이는 차원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발제자의 지적대로 형식적 공정성 강화는 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있어 처음부터 내정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토론

발제 2의 제안 중 로스쿨 제도를 3년→4년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은 실무수습의 내실화 및 다양화, 임상법학교육의 실질화, 주요 과목에 대한 심화교육 등 긍정적으로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를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 포섭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로스쿨 과정을 4년 과정으로 늘리는 것은 학년당 2,000명, 총 8,000명 규모의 로스쿨생을 수용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4년제 개편으로 바로 학년당 정원 감소로 연결시키는 것은 로스쿨의 현실(정원을 단 1명도 줄이지 않으려는 개별 로스쿨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정원 축소의 문제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1년 늘리는 틀이 아닌 다른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토론자는 로스쿨 과정을 3+1로 하여 3년은 로스쿨 내에서 현행처럼 교육을 받고, 남은 1년은 법원, 검찰, 변호사 수습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는 사법연수원 2년차의 방식과 유사하다)을 제안한다.

한편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유급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한다. 학사관리 강화 및 유급제도 활성화가 변호사시험 합격률(현행 합격정원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을 높이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시 불합격자가 향후 진로를 어떻게 모색하고 진출하는지에 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실태조사 내지 연구 없이 유사 법조직역이나 법무관련 공공직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통로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

다.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토론

발제 3과 관련하여 기초법학 교과목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군으로 포함하고 이를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 로스쿨 교육은 법학지식을 가르치기 보다는 법적추론방법(리결마인드)을 가르치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법학에 대한 교육은 분명 내실화시켜야 한다.

전문법학 교과목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로스쿨 선택과목 이수제로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법학 교과목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의 수요, 개별 로스쿨에서의 수업 여력 및 재정여건 등 여러 측면의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로스쿨에서는 리결마인드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은 실무에서 익히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무법학 교과목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를 변시 기록형 시험 범위에 반영하며, 외부기관 파견 또는 변시 이후 실무교과목 교육을 하는 방안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토론자 개인의 생각으로 지나치게 실무법학 교과목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로스쿨생들이 리걸마인드 형성 등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실무 테크닉(소장 및 공소장 작성과 같은)을 쌓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이는 발제 2에서 제안한 로스쿨 과정 1년 연장[3(로스쿨)+1(외부기관 수습)]으로 연계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 로스쿨 임상법학교육(리걸클리닉) 개선방안

가. 로스쿨 임상법학교육과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

생각해보면 로스쿨 내에서 리걸클리닉교육과 변호사 업계에서 프로보노 활동은 꼭 닮아 있다. 로스쿨 내에서 리걸클리닉교육은 리걸클리닉센터를 맡은 교원만 관심 있을 뿐 다른 교원은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업계에서 프로보노 활동은 공익전담변호사와 일부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의 관심 사항일 뿐, 다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프로보노에 별로 관심이 없다.

로스쿨 과정에서 사회봉사 경험을 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통해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것이 로스쿨 설립취지였다. 변호사법상의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원래의 취지를 도외시하였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상 명시된 사명을 도외시하여 ‘윤리적 법률가’라는 말은 딴 세상 얘기가 되어버렸다.

로스쿨 교과과정에서 리걸클리닉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경험을 하도록 한다면, 그 연장선으로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도 대폭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할 책무를 지고 있는 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나. 임상법학교육 개선방안

임상법학교육은 로스쿨 교육과정 중에 실제 사건에 참여하여 실무를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하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는 교육이다. 그러나 현재 각 로스쿨은 정도의 차이가 있

지만, 대부분 변호사시험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로 인해 로스쿨 내 임상법학교육은 갈수록 형해화되어가고 있다. 각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은 리걸클리닉센터장과 담당 겸임교원 외에 다른 교원들은 거의 관심 갖지 않는 찬밥 취급을 당하며 학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힘들다.

상법학교육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수학점 상향, 교과목 편성 의무화, 다양한 임상법학 교과목 편성, 임상법학 교육방법론 개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 차원으로 임상법학교육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을 재개하여야 하고(2012년~2016년 국고지원금 지원), 인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임 임상교수나 지도변호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 변협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형사 국선변호, 민사조정 등에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이범준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토론문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더 좋은 로스쿨 제도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사법전문기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시절 로스쿨 도입 과정과 운용 문제를 취재한 경험이 있고, 이후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로스쿨 교수와 학생을 조금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신 발제자들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어보겠습니다.

1. 발제1에서 로스쿨 신입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만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25%까지 늘리자고 한 제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 로스쿨에서 이른바 상위 학부 출신 학생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선발 과정에서 정량 평가를 강화하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 평가는 학점과 법학적성 시험 성적을 가리키고, 특히 법학적성시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상황을 발제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로스쿨에서 상위 학부 출신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 5월 교육부 발표와 그에 뒤따른 각 로스쿨들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강화되었음이 확인된다. ... 공정성을 제고한 결과 특정 대학 편중 비중이 강화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로스쿨 현장에서는 다양성을 고려하고 싶어도 정량 평가를 우선시하다 보니 성적이 좋고, 학부를 갓 졸업한 나이 어린 학생이 선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는 “많은 제도개선을 거듭해왔으나 여전히 입시의 불투명성 문제, 연령 차별, 학벌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과감한 입시제도 변경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적성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시험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입시 전형을 최대 25% 범위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발제자의 제안은, 정량 평가의 비중이 높아 로스쿨 신입생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시 정량 평가의 대표 요소인 법학적성시험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전체 25%까지 확보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양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발제2 가운데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현행 3년제인 로스쿨을 4년제로 개편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서, 인구 감소와 리걸테크 발전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 감소에 대응하자고 한 제안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발제자께서는 “법전원을 4년제로 개편할 경우 … 추가된 1년 동안 약 30학점을 더 이수할 수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학업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확장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년당 로스쿨 정원도 축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년당 약 1,600명 수준으로 조정하여 총 정원을 약 6,4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현재 학년당 정원 2000명을 1600명으로 20%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해 로스쿨 합격자 수도 줄이자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년당 정원이 감소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합격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양상을 보면 낮은 수준의 논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수준의 논리 즉 인간에게 창의력이라고 불리는 수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 기사들에게 인공지능에 완전히 밀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장강명, 먼저 온 미래, 2025, 52~55쪽 등).

이런 상황이기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수요 감소는 사건 감소뿐 아니라 질적으로 고도화할 이유 감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도 프로 기사들이 하듯이 직업 윤리나 인공지능 활용법을 교육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등장으로 법률서비스에서 변호사 역할이 줄어들어 변호사 수도 조절해야 한다면, 법률 지식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기간 연장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발제3은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를 확인하면서, 법학 교육이 위기를 넘어 해체에 이르면 법치주의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실무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교육 변경보다는 학교 교육, 시민 교육 강화에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현재 로스쿨 교육이 법치주의를 위협할 만큼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제자께서는 로스쿨 교육의 주요 문제점으로 판례 위주 교육을 꼽습니다. “법적 지식보다는 법적 사고 능력이나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더 중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식이 아닌 방법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인공지능 발전도 듭니다. “인공지능과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해지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전문직 영역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중심주의, 실체세계 중심주의, 유체물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발제자 지적대로, 규범이 당위가 아닌 사실로 인식된다면, 학문으로서 법학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것이 길게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이 학문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학자를 발굴하는 장(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판례 위주의 교육이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보와 통신의 발전으로, 법치주의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치학이 부상하고 법학의 지위가 하락하는 과정 아닌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발행인	조 순 열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 소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팩 스	02) 6234-0351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비매품〉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